

연구보고 2009-12

행정법상 금전적 제재수단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연구

강 문 수

행정법상 금전적 제재수단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asonable Monetary Disciplinary
Measures under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연구자 : 강문수(부연구위원)
Kang, Mun-Soo

2009. 10. 31.

국문 요약

행정법상 대표적 금전적 제재수단으로서는 과태료, 과징금 그리고 이행강제금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이미 입법상 일반화된 과태료와 과징금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제재적 처분기준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금액 또는 제재처분을 규정하고 있어 의무위반자와 행정청간의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제시 된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의 경우, 그 법리적 성격의 규명에 관한 논의는 물론 산정기준과 불복절차에 관한 실무상 집행공무원과 의무위반자 간 논란이 항시 되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연구자는 일반화된 금전적 제재수단으로서의 각 제도가 가지는 특성과 아울러 의무위반자의 의무위반행위와 처분기준(금액) 간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부과기준의 적정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부과절차와 불복절차 등의 문제점을 함께 고찰하여 정비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으며, 연구자는 이를 금전적 제재수단의 합리화 방안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행질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의 과태료와 기타 다른 성격의 제재수단을 병과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지로써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효과를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고려되어진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국민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과잉 제재적 효과를 발생하고 이는 곧 국민과 행정청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연구에서는 법규정상 병과되는 경우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①과태료-영업정지, ②과태료-벌칙, ③과태료-과징금, ④과징금-벌칙) 이에 대한 분석과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휴·폐업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삭제 원칙은 현행 이를 규정한 각 개별 법률의 입법목적과 신고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으로 타당

하지 않을 수 있기에 각 개별법상 휴·폐업신고의 대상이 되는 업무가 공익성을 가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삭제함이 타당함. 또한 이러한 삭제의 경우 대비안의 제시 또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기관에 대한 유사명칭사용금지 규정의 입법취지는 현대생활에 있어 인터넷의 괄목할 만한 성장 및 이용자의 법인식의 변화 그리고 법인설립에 있어 주무관청 등의 주의의무 강화 등으로 인하여 그 입법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경향에 있음. 때문에 특수법인에 해당되는 기관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은 폐지하고, 다만 해당 기관의 특별한 의무유지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존치하도록 함.” 이라는 특수법인에 대한 유사의무사용 금지의 원칙적 폐지를 논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수법인이 가지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고려시 다소 무리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유사명칭금지 의무에 있어 현행과 같이 나타나는 부과금액간의 현격한 차이는 비제재화 방안에 대한 정비방안이라기 보다는 부과기준이 과도한 경우 또는 부과기준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로 설정함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인식되어 진다.

차수규정의 확대 적용에 관하여 연구자는 과태료부과기준의 합리화를 위한 입법적 정비안의 큰 축은 비제재화와 제제의 적정성 도출방안으로 축약되어지며, 이는 위반사항의 성격을 중심으로 그 구체화내지 세분화를 통한 적정성 도출에 의미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경미한 또는 과도한”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세분화가 용이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어지고, 더욱이 법리적 측면에 있어 일반적 행정제재처분(영업정지 등)과는 달리 금전적 제재라는 특성에 기인하여 제1차 처분시 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의 처분규정을 선행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을 문제의식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근거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집행행정청 및 법원에 감경에 대한 요건을 명문화 하였다고는 하나 실무에 있어 집행공무원 등의 입법취

지에 상응하는 재량권행사 여부는 의문시됨을 차수규정 확대 적용을 위한 근거의 하나로서 언급한 바 있다. 이미 다수의 개별법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차수규정의 확대적용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① 적용대상을 확정하고, ② 차수규정에 있어 입법적 형식의 주요요소인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단계적 차수 및 부과기준에서 차수산정을 위한 일정기간을 설정하고, ③ 단계적 차수에 대한 부과금액의 비율에 대한 기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화를 위한 정비방안으로서는, ① 실무상 그리고 법리상 항시 논의 시 되어오던 과징금과 기타 행정제재의 병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의무위반자의 입장에서 사실상 이중 제재적 효과를 발생하여 과도한 제재적 처분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는 과징금 - 형벌의 병과규정에 대한 비제재화, ② 과징금 부과기준의 명확화 (과징금 부과 시 고려사항 - 부과액산정을 위한 부과기준, 산정방법 그리고 집행공무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재량권 행사를 위한 부과 시 고려사항 및 가중·감경기준, 납부유예-분할, 과징금산정방법의 규정화)의 도출 및 ③ 현행 부당이득 환수적 과징금에 관한 부과기준에 관하여 하위법령에 별표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8건에 해당하고 있고, 이와 같은 별표를 따로이 규정하여 부과기준을 입법화하는 것은 관련 국민의 입장에서는 보다 자신의 의무위반행위와 자신이 부과 받게 될 과징금액의 산정과 내용에 관하여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집행공무원의 입장에 있어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과징금 관련 분쟁에 대한 사전적 판단의 척도로서 자신의 재량권행사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을 부각하여 하위법령상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를 통한 구체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합리화에 관한 정비기준안은, ① 현행 21건의 법령중 9건의 법령에서 부과주기에 관하여서는 “1년에 2회”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법령은 물론 타 법령에 있어서도 시정명령을 받

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부과회수의 상한에 대해 정해져 있지도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지도 않음에 대하여 법적 규정의 신설을,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고지가 있는 후 납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위법상태를 해소한 경우, 그 해소된 기간만큼은 부과금액을 감액하여 재부과 하여야 하는지, 또는 재부과시일이 소요된다면 이미 납부한 금액에서 해당분을 환급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건축법의 예에서와 같이 위법상태를 해소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되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함을 7건의 법률을 대상으로 제시하였으며, ③ 이행강제금의 불복절차에 대한 논의의 전개와 아울러 현행 농지법 등 총 4개의 법률에서 아직도 규정되고 있는 과태료부과절차의 준용규정에 대한 정비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이와 같은 정비안의 제시는 향후 금전적 제재처분에 있어 집행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보다 투명한 재량권 행사를 위한 척도로서, 그리고 의무위반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자신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실질적 권익의 향상과 법질서 확립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키워드 :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의 합리화, 비례의 원칙

Abstract

Under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fine for negligence, penalty surcharge, and charge for compelling the performance are the major monetary disciplinary measures. Among them, the fine for negligence and the penalty surcharge are frequent subject of the action by breachers because the authorities do not consider the content and degree of the breach of the performance. In addition, in case of the charge for compelling the performance, there are questions regarding to its legal nature, standard for calculation, and process for appeal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suggest a reasonable standard of charge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unique character of the individual monetary measures, proportionality test and equality test. Moreover, this study reviews some problems in the process of charge and appeals and tries to suggest some improvements.

The suggestion(s) that was deduced in this study will be helpful for authorities to exercise their power in more transparent ways and for breachers to secure visibility of their conduct of breach. Ultimately, it is anticipated that those suggestions woul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Korean people's rights in the context of substantial and substantive ways and re-establishment of legal order.

※ Key Words : the Reasonable Monetary Disciplinary Measures, fine for negligence, penalty surcharge, charge for compelling the performance, proportionality test

목 차

국문요약	3
Abstract	7
제 1 장 서 론	13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3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 2 장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17
제 1 절 현행 과태료 규정 법제 현황 및 검토	17
1. 현행 과태료 규정 법제현황	17
2. 과태료 법제현황의 검토	20
제 2 절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기준	20
1.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를 위한 일반정비기준	20
2.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를 위한 세부정비기준 도출 방안	25
3. 과태료 부과기준상 9개 유사 의무위반 사유별 세부정비방안	25
4.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세부기준	109
제 3 절 소 결	131
제 3 장 과징금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135
제 1 절 현행 (부당이득 환수적)과징금 규정의 법제 현황 및 검토	135

1. 부당이득 환수적 과징금 규정 법제 현황	135
2. 부당이득 환수적 과징금의 법제현황의 검토	138
제 2 절 과징금 부과기준 적정성제고를 위한 정비기준	139
1. 동일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벌금 병과 (『도시가스사업법』 등 112개 법률)	140
2. 과징금 부과기준상 규정내용의 명확화	141
3. 하위법령상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를 통한 구체화	145
제 3 절 소 결	149
제 4 장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151
제 1 절 현행 이행강제금 규정 법제 현황 및 검토	151
1. 현행 이행강제금 규정 법제 현황	151
2. 이행강제금 법제현황의 검토	156
제 2 절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기준	163
1. 이행강제금의 부과회수 상한의 구체화	163
2. 이행강제금 부과 후 위법상태 해소 조치의 규정화	164
3. 이행강제금의 불복절차	165
제 3 절 소 결	166
제 5 장 요약 및 결론	169
[참 고 문 헌]	173

【첨 부】

[첨부 1] 현행 과태료규정 법률 및 금액	181
[첨부 2] 현행 하위법령상(별표) 과태료규정 주요내용 현황	207
[첨부 3] 현행 과태료-영업정지 병과법률 현황	261
[첨부 4] 현행 과태료-벌금 병과법률 현황	283
[첨부 5] 현행 과태료-과징금 병과법률 현황	285
[첨부 6] 현행 과징금-벌금 병과법률 현황	28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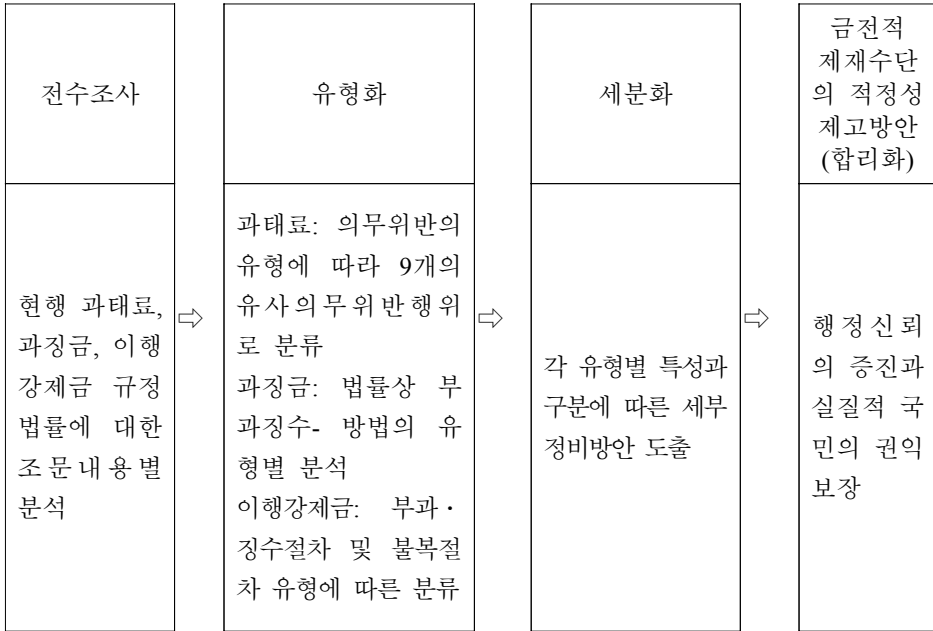
행정법상 금전적 제재수단으로서는, 행정질서벌적인 성격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행정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써, 행정법상 의무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서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목적을 침해하지 않으나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을 정도의 단순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로 이해되어 지고 있는 과태료, 행정법규 또는 행정법상 의무의 위반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자에 대하여 행정벌 만으로는 그 위반을 막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행정법규위반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박탈함으로써 행정법규위반행위를 막는 효과를 가지는 금전적 행정제재처분인 과징금 그리고 일반적으로 비대체적 작위위무, 부작위 의무 또는 수인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의무자에게 강제금부과라는 심리적 압박을 강하여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이행강제금 등이 있다.

특히 금전적 제재수단의 대표적 유형으로서 이미 입법상 일반화된 과태료와 과징금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제재적 처분기준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금액 또는 제재처분을 규정하고 있어 의무위반자와 행정청간의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제시 된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의 경우, 그 법리적 성격의 규명에 관한 논의는 물론 산정기준과 불복절차에 관한 실무상 집행공무원과 의무위반자 간 논란이 항시 되어지고 있다. 이는 종국적으로 국가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 확보라고 하는 법·제도의 고유한 입법취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본 연구는 과태료를 중심연구대상으로 하여, 과태료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등 현행 540여개의 개별법령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태조사를 통하여 규정의 입법형식에 관한 검토는 물론, 나아가 유사위반행위에 대한 각 개별법령 간 부과기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 행정처분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현행 100여개의 개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경우, 법령전수조사에 근거, 고전적 의미의 과징금(부당이득 환수적 과징금)에 중점을 두고 법령간 비교·분석을 통한 법리적 문제점과 구체적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정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현행 21개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부과절차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법제 정비안을 제시하여 행정법상 금전적 제재수단에 관한 법체계성의 확립은 물론 법-제도 간 정합성 확보를 통한 국민과 행정기관 간 분쟁요소를 제거하여 행정실패의 증진과 실질적 국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과태료의 경우 「부동산등기법」 등 538개 법률, 과징금의 경우 「대외무역법」 등 108개 법률, 이행강제금의 경우 「건축법」 등 21개 법률)하며, 이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수행 추진 전략을 통하여 정비기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추진을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한 현행 금전적 제재수단에 관한 논의점 검토와 각 개별 관련 법령의 전수조사 및 분석을 통한 처분양정의 적정성 검토, 실태조사에 근거한 집행 행정기관에 대한 금전적 제재수단의 운용 현황 파악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 인식, 그리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활용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한다.

제 2 장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제 1 절 현행 과태료 규정 법제 현황 및 검토

과태료란 행정법상의 질서벌적인 성격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행정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인 바, 행정법상 의무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서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목적을 침해하지 않으나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을 정도의 단순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로 이해되고 있다.

1. 현행 과태료 규정 법제현황

현행 「부동산등기법」 등 538개의 개별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는 과태료 규정에 관한 법제현황은 아래와 같다. (※ 첨부 1참조)

- (1) 입법형식: 법률에서 규정(229건), 하위법령 별표에서 부과기준을 규정(309건)

[하위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 현황 및 주요내용]

하위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	입법형식		차수규정 (62건)		가중·감경 규정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산정기준 (일정기간 = 년)	
309	291	18	①	②	106

※ ① 부과기준에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단계적 차수

법령총수	2차	3차	4차	4차
70	3	63	3	1

※ ② 부과기준에서 차수산정을 위한 일정기간

법령총수	1년	2년	3년	4년	5년
70	49	7	9	2	3

※ 첨부 2참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의 불균형을 방지하고 입법예고절차를 거쳐 국민의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부령으로 입법 할 시의 행정관청의 행정편의적·자의적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과태료의 부과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아니하고 바로 조례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함).

(2) 현행 법률 규정상 과태료부과 징수 절차

현행 과태료 규정상 그 부과징수절차에 대한 규정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즉,

1유형: 과태료의 부과대상 행위 및 과태료 액만을 규정하는 방식 - 과태료 위반사실은 관계 행정관청이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음에도 행정관청이 이 위반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원이 직접 위반사실을 인지하여야만 부과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2유형: 과태료부과·징수절차는 행정절차화 하고 불복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르도록 방식 - 행정관청에 의한 1차적인 과태료의 부과는 법원에 의한 부과보다 행정편의적·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

3유형: 과태료의 부과대상행위·부과주체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징수방법을 국세 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하는 방식 - 소송경제적인 측면에서 행정쟁송에 따라 구제신청을 받는 것보다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정한 과태료재판 또는 약식명령 및 이에 대한 즉시항고 등의 절차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고려되어 진다.

이러한 과태료 부과절차에 대한 유형과 지속되어지던 논의는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을 통하여 일률적으로 통일되어 졌다.

(3) 과태료부과 금액

구 분 유 형	법령건수	총 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억원 이하	1	538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 1억원 이하	7	
외국환거래법 등 - 5천만원 이하	6	
소비자기본법 등 - 3천만원 이하	1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 2천만원 이하	24	
교통안전법 등 - 1천만원 이하	91	
가축전염예방법 등 - 500만원 이하	121	
고도보존에 관한 법률 등 - 300만원 이하	79	
광산보안법 등 - 200만원 이하	71	
건축사법 등 - 100만원 이하	84	
디자인보호법 등 - 50만원 이하	26	
건축법 등 - 30만원 이하	4	
환경교육진흥법 등 -20만원 이하	2	
국민연금법 등 - 10만원 이하	3	
부동산등기법 등 - 5만원 이하	2	
기 타	2	

※기타: 『도서관법』 - 해당자료정가의 10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가액의 2배

2. 과태료 법제현황의 검토

현행 538건의 개별법률에서 규정되고 있는 과태료 규정은 개별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는 경우가 229건, 하위법령상 별표에서 부과기준을 규정되고 있는 경우가 309이며, 하위법령상 별표기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서는 차수규정을 신설하여 차등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이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완화적 효과를 주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관한 단계적 차수와 위반차수 산정을 위한 년도는 각 3차와 1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부과 금액에 관하여서는 상당히 넓게 부과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이다.

제 2 절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기준

1.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를 위한 일반정비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의 정비방안 도출을 위한 일반기준으로써 이는 모든 과태료 관련 정비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상정한다.

1. 입법시기가 오래되거나 또는 실제 법 적용상 현 상황과 맞지 않아 사실상 이미 사문화된 성격을 가지는 규정은 **삭제하도록 한다.**
2. 의무위반행위에 비하여 과태료 금액이 과도하게 규정되었다고 고려되어지는 규정은 타 개별 법률상 유사의무위반에 대한 규정과의 비교를 통하여 부과금액의 정도를 정비하도록 한다.
3. 2항의 경우에 있어 일회적 부과금액의 정비가 어려운 의무위반사유에 관하여서는 하위법령에서 위반행위의 차수규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제1차 -**

제2차 - 제3차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을 규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차수규정을 신설토록 한다.

4. 각 개별 법률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내용에 있어 가중·감경기준에 관한 규정을 결하고 있을 경우, 하위법령에서 이를 반드시 규정하도록 한다.
5. 다만, 위 각항에 해당되어 그 정비를 요한다 할지라도, ① 의무위반사유가 개별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직접적 요건인 경우, ② 의무위반사유가 공익의 실현 및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상 현저한 불이익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국가 경제적)사회질서유지를 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 및 ④ 공직자 윤리 등에 관한 법규 내용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6.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은 입법형식에 있어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다.

(1) 입법시기가 오래되거나 또는 실제 법 적용상 현 상황과 맞지 않아 사실상 이미 사문화된 성격을 가지는 규정은 삭제하도록 한다.

국가의 행정에 관한 조직-작용-구제에 관한 규범체인 행정법상 행정처분기준은 사회적 상황 또는 국가행정의 다변화에 민감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입법시기가 오래되거나 또는 실제 법 적용에 있어 현실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불필요한 행정집행에 따른 국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게 되는 바,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의무위반행위에 비하여 과태료 금액이 과도하게 규정되었다고 고려되어지는 규정은 타 개별 법률상 유사의무위반에 대한 규정과의 비교를 통하여 부과금액의 정도를 정비하도록 한다.

현행 438개의 개별 법률에서는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상이한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개별 법률이 얻고자 하는 각각의 개별 입법목적 실현을 고려한다면 이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그러나 위 538개의 법률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287개의 별표기준을 유사한 의무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본다면 경우에

따라 유사의무위반행위와 위반정도에 대하여 현격한 과태료의 부과 금액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의무위반자간의 형평성의 문제와 위반행위와 과태료 부과 금액 간 처분양정에 따른 행정법상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 위반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의 개선을 위하여 유사의무행위별 과태료 금액에 관한 비교-검토를 통한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3) 일회적 부과금액의 정비가 어려운 의무위반사유에 관하여서는 하위법령에서 위반행위의 차수규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제1차 - 제2차 - 제3차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을 규정하도록 한다.

과태료의 법리적 성격(금전적 제재수단)상 다른 행정제재수단을 규정한 행정처분기준에서와 같은 자발적 시정을 요하는 “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의 도입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 최근 과태료 제도에 관한 별표 상 입법양식의 변화에서와 같은 과태료 부과기준에서의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여 정비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4) 각 개별 법률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내용에 있어 가중·감경기준에 관한 규정을 결하고 있을 경우, 하위법령에서 이를 반드시 규정하도록 한다.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처분기준 별표 상 가중감경기준 규정 현황표〉

구 분	감경기준을 규정한 법령		감경기준 불비	총계
	①	②		
건 수	104	2	203	309

①: 법령에서 감경기준에 관한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고 있거나 그 위반의 동기·내용·횟수·결과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②: 법령에서 감경기준의 범위를 결하고 있거나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구체적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각 개별 법률에서 또는 하위법령의 행정처분기준 별표 상 일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중·감경기준의 의미는 집행공무원의 입장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의무위반 상황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의무위반행위에 상응하는 행정제재처분을 가능하게 하고, 의무위반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원인, 동기, 상황의 고려 및 위반 정도에 대한 실질적이고 수궁할 수 있는 제재부담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입법적 고려에 있다.

과태료 규정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가중·감경 기준의 중요성은 동일한 것이며, 특히 현재의 제1 국가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경제생활의 진흥이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 이러한 가중·감경기준의 유무는 입법기준상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현행 반수이상의 과태료부과기준에서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최소한 비고란)을 설정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제1안이 입법경제상 어려움이 있다면 합리화 방안이 종국적으로 요구하는 국민부담의 완화라는 효과적인 측면에 있어 감경규정을 확충하고 무엇보다 가능한 한 감경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규정 내용에 있어 최소한 그 위반의 동기·내용·횟수·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5) 다만, 위 각항에 해당되어 그 정비를 요한다 할지라도, ① 의무위반사유가 개별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직접적 요건인 경우, ② 의무위반사유가 공익의 실현 및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상 현저한 불이익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기준은 위 일반 정비기준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비록 해당 규정이 위 각항에 해당되어 그 정비를 요한다 할지라도, ① 의무위반사

유가 개별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직접적 요건인 경우, ② 의무위반사유가 공익의 실현 및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상 현저한 불이익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을 규정한 것이다.

(6)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은 입법형식에 있어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다.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입법형식 현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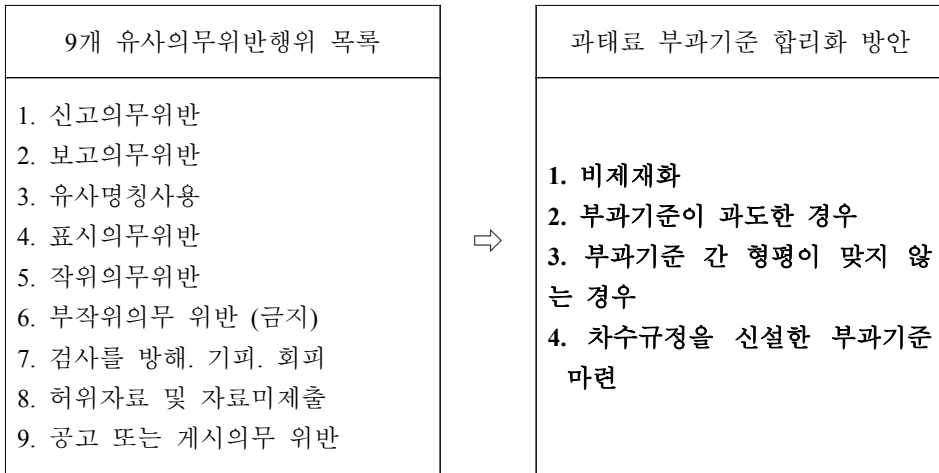
입 법 형 식			
법령건수	대통령령	부령	총계
		291	18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의 불균형을 방지하고 입법예고절차를 거쳐 국민의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부령으로 입법 할 시의 행정관청의 행정 편의적·자의적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과태료의 부과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아니하고 바로 조례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과태료 이외의 금전적 제재수단(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입법형식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부령보다는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는 입법경향에 있다. 이는 과거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직접적 제재보다는 금전을 통한 간접적 제재수단이 일반화됨에 따라 금전의 부과와 징수는 국민의 기본권중 현대사회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 침익이라는 점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고려된다.

때문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8개 법령은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입법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를 위한 세부정비기준 도출 방안



3. 과태료 부과기준상 9개 유사의무위반 사유별 세부정비방안

(1) 신고의무위반사유

신고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에 법률사실이나 어떤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하며, 실무상 신고라는 용어 대신 ‘보고’나 ‘명세서’ 등의 형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신고를 하고자 하는 국민의 서류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업무는 수리이며 이는 준 법률적 행위이다. 국민의 정부시절 규제개혁의 관점에서 종전의 허가의 대상들이던 규정들이 다수 신고로 전환되어진 바 있으나, 단순히 변경신고를 하지 않

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무위반에 대한 법적효과에 있어 변함없이 허가 의무위반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거나 또는 국민의 입장에 있어 그 필요성이 의문시되는 폐업신고 의무위반으로 처벌되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의무위반의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적인 허위·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와 단순 변경신고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제재처분의 양정을 달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단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주소지의 변경 등과 같이 단순한 신고 의무가 아닌 영업행위를 지속하거나 또는 물품의 제조시에는 고의·과실적인 제재처분에 준하여 처분양정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1) 단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거짓·허위 신고를 한 경우를 구분하여 처분양정을 달리하여 단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보다 경하게 정비한다.

[현행규정예시]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 별표2	3. 법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10조의5 (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②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제54조 제1항 제1호	1000만원		

제 2 절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기준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 별표2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승계자 제 7 조 (사업의 승계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54조 제2항 제1호	500만원		
	노인장기 요양 보호법 시행령 별표3	2.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제33조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에 관한 변경) 장기요양기관은 시설 및 인력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변경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69조 제1호	200만원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별표16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격장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第11條 (管理者의 選任) ②射擊場設置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者를 選任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許可官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解任한 때에도 또한 같다.	법 제24조 제2항 제1호	25만원		

2) 미신고의 경우, 그 성격이 고의 또는 과실적 성격이 아닌 단순 착오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차수규정을 신설하여 부과금액을 차등적으로 규정한다.

[현행규정예시]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p>차.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양도·합병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제11조 (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①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p> <p>1.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등록사업자인 법인과 등록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등록사업자인 법인이 등록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법 제40조 제3항 제2호	200만원		
	삭도· 케도법 시행령 별표2	<p>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p> <p>제 4 조 (事業許可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법 제38조 제1항 제1호	100만원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물류정책 기본법 시행령 별표4	2. 법 제45조에 따른 사업의 승 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45조 (사업의 승계) ① 국제물류 주선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 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 한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 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국제 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 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 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 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계받은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	법 제73조 제1항 제2호	150만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 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가. 법 제3조제6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 3 조 (등록 등) ⑥ 대부업자 또 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 등”이라 한다)가 제3항 및 제3조 의2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분실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20만원	100 만원	200 만원

3) 규정에서 신고와 변경신고를 함께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 있어, 절차상 선행되는 신고의 성격이 시장진입적인 경우, 시장진입적 신고와 이미 신고된 내용중 일부를 변경하는 변경신고는 그 가별성이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경신고위반은 신고위

반에 비하여 경하게 정비한다.

[현행규정예시]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방송법 시행령 별표4	16. 법 제8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송망 사업을 행한 자 第82條 (傳送·線路設備의 이용) 傳送網事業者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傳送·線路設備利用料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約款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법 제108조 제1항 제16호	1000만원		
	삭도·케도법 시행령 별표2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착수하거나 시행한 자 第 8 條 (공사의 시행) ③삭도사업자 또는 케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내용 및 공사기간 등이 포함된 공사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공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100만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5	1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43조 (비산(飛散)먼지의 규제) ①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 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	법 제94조 제2항 제3호	60만원	80만원	100만원

제 2 절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기준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사업의 개시와 휴업·폐업신고가 함께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 있어, 이는 영업자에 대한 의무성격과 법감정에 비추어 형평이 유지되도록 이를 구분하여 사업의 개시보다는 휴업·폐업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경하도록 정비한다.

[현행규정예시]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2	2.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10조의4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②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54조 제3항 제1호	500만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4	10.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휴지·재개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휴지·재개 또는 폐지한 자				

제 2 장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가. 재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나. 휴지 또는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第38條 (施設の 休止・再開・廢止 申告등) ②施設の 運營者は 그 운영을 休止하거나 再開 또는 施設을 廢止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를 하여야 한다.		100만원 200만원		

5) 휴업·폐업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의 미신고로 인하여 타인의 권익 또는 공익에 심대한 불이익을 야기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시에는 이를 폐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과태료부과를 통한 법익보다 이로 인한 의무위반자의 경제적 침익이 과도하다고 인정될 수 있거나 법령에서 휴업·폐업신고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수규정을 신설하고 부과액에 차등을 두어 규정한다.

[현행규정예시]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노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2	5.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第40條 (변경・廢止 등) ①第33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老人住居 福祉施設을 設置한 者 또는 第35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老人醫療福祉施設(老人專門病院을 제외	법 제61조의2 제2항 제2호	100만원		

제 2 절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기준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p>한다)을 設置한 者가 그 設置申告事項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施設을 廢止 또는 休止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申告하여야 한다.</p> <p>②老人專門病院을 設置한 者가 그 設置許可事項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醫療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の 變更許可를 받아야 하며, 그 施設을 廢止 또는 休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同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미리 申告하여야 한다.</p> <p>③第37條第2項에 의하여 老人餘暇福祉施設을 設置한 者 또는 第3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在家老人福祉施設을 設置한 者가 그 設置申告事項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施設을 廢止 또는 休止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미리 申告하여야 한다.</p> <p>④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設置한 者가 그 設置申告事項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施設을 廢止 또는 休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도지사에게 미리 申告하여야 한다.</p>				

제 2 장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삭도·케도법시행령별표2	<p>14.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용삭도 또는 전용케도의 휴지·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第17條 (名義變更申告等) ①索道事業者 또는 軌道事業者는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p> <p>3. 索道事業 또는 軌道事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休止 또는 廢止하고자 하는 때. 다만, 軌道の 파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日이내에 申告하여야 한다.</p>	법 제38조제2항제7호	50만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2	<p>바.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제 5 조 (변경등록 등) ②대부업자가 영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법 제21조제1항제1호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6) 변경신고의 경우 그 신고의 내용이 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법익에 비추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법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수규정을 신설하고 부과액을 차등적으로 규정한다.

[현행규정예시]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삭도·케도법시행령별표2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제 4 조 (事業許可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38조 제1항 제1호	100만원		
	방사성 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4	1. 법 제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 7 조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되,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농산물 품질 관리법시행령별표3	나. 법 제7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법 제7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 7 조의5 (농산물이력추적관리) ①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농산물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농산물을 농림수산물부령에 등록할 수 있다.	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나목	300만원		

제 2 장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p>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7)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 부당이득적 요소(영업행위 등)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 간 부과액을 고려하여 개별법상 법익에 비추어 금액을 조정하도록 한다.

[현행규정 예시]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p>3. 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자</p> <p>제19조 (채종림등의 지정·관리 등)</p> <p>⑤ 채종림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채종림등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p> <p>1. 입목·죽의 벌채</p>	법 제79조 제1항 제1호	300만원		

제 2 절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기준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2. 임산물의 굴취·채취 3. 가축의 방목(放牧) 4.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농약 관리법 시행령 별표3	가. 법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입식물방제업을 한 경우 第 3 條의2 (營業의 申告) ①防除業 중 輸出入植物에 관한 防除業(이하 “輸出入植物防除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者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立植物檢疫機關의 長(이하 “國立植物檢疫機關의 長”이라 한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법 제40조 제1항	300만원		
	농업유전 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나.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내 농업유전 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 제10조 (국외반출승인 등)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유전 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외국에서 수집된 도입종 2. 품종보호기간이 만료된 국내 육성종 3.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반출되는 유전자원(재래종·야생종을 제외한다)	법 제22조 제1항 제2호	300만원		
	산림 자원의 조성 및	4.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입목벌채 등을 한 자	법 제79조 제1항	200만원		

제 2 장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36조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④ 병해충·산불 등 자연 재해를 입은 입목(林木)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제2호			
	내수면 어업법 시행령 별표0	6.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자 제45조 (보안림의 관리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림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할 수 있다.	법 제79조 제1항 제3호			

(2) 보고의무위반사유

사전적 의미에 있어 보고란 일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를 말이나 글로 알리는 행위로 이해되어지고 있다. 행정법상 보고에 관한 개념적 정의는 없으며, 그 법적 성질에 관하여서도 사실행위 내지 준법률적 행정행위의 성격 등으로 일치하고 있지 않은 경향에 있다. 과태료와 관련하여 보고 의무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에 있어 문제시 되는 것은,

개별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 행정목적의 실현에 있어 보고라는 절차적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게 중한 처분을 하고 있는 경우와 보고의무위반과 함께 다양한 이질적 성격을 가지는 제재수단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법리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1) 단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거짓-허위로 보고한 경우를 구분하여 거짓-허위로 보고한 경우에 대하여 보다 중하게 처분하도록 정비한다.

[현행규정예시]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p>제53조 (과태료) 10.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p> <p>제25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p>		200만원 이하		

2) 보고의무위반의 규정상 “부실한 보고를 한 경우”등 규정내용이 다소 불명확한 경우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정비한다.

제 2 장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현행규정예시]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선주상호 보험 조합법 제65조	<p>제6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 제43조제2항·제3항 및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 또는 제5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108조의 보험관리인이나 지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9. 행정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p>		500만원 이하		

3) 보고의무위반의 내용과 함께 이질적인 다른 의무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각각의 정비방안에 맞추어 정비하도록 한다.

[현행규정예시]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p>제28조 (과태료)</p> <p>2.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제21조제3항의 규</p>		300만원 이하		

제 2 절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기준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제28조	<p>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제21조 (보고 및 검사) ②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업자등 : 생산량, 수입량, 설치대수 및 보수용 부품 확보 현황 2. 보수업자 : 기술인력, 보수대수, 보수계약 체결 승강기 관리주체 현황 3. 관리주체 : 자체점검, 운행관리자, 사고 현황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시행령 별표3	<p>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한 자</p> <p>제10조 (지도·감독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p>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300만원		

제 2 장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p>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별표12</p>	<p>5. 법 제114조제1항 또는 법 제1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거나 서류나 물건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p> <p>제114조 (보고 등) ①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보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법 제129조 제2항 제3호</p>	70만원	100만원	

(3) 유사명칭사용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서 특정자격을 부여하면서 당해 자격을 갖춘 자 외에는 이러한 자격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와 법률에서 만들어진 특정기관의 명칭을 그 기관외의 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 두는 규정이다. 이러한 제도를 두는 것은 특정 자격자 또는 특정기관에 독점적 명칭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써 특정자격자나 기관의 권리를 보호하고 무자격자의 명칭사칭이나 유사기관의 설립에서 오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임. 특히, 현행 각 개별법률에서는 이와 같은 특정기관에 대하여 공사, 공단, 협회, 센터, 진흥원, 관리원 등 다양한 기관의 형태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부과금액 간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음. 현대 사회에 있어 이와 같은 기관의 유사명칭에 대한 규정의 실효성은 의문시 되며, 특별히 요구시되는 실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적기관에 관한 유사명칭사용금지조항은 삭제함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1) 특정기관

a. 공 사

[현행규정예시]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4	11.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43조 제1항 제5호	1000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20조 (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 6 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12.26]		50만원 이하		

제 2 장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b. 공 단

[현행규정예시]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9조 (과태료) ① 제3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 3 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7.7.27]		500만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별표 2	1. 제66조를 위반하였을 때 가. 고의나 상습적으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같은 명칭을 사용한 자 나. 고의나 상습적으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다. 그 밖의 방법으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66조 (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법 제86조 제3항 제1호	100만원 70만원 50만원		

c. 협 회

[현행규정예시]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법률	제24조 (과태료<개정 2000.1.12>)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에 처한다.<개정 2000.1.12> 제13조 (명칭사용의 제한) 이 법에 의한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00만원 이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처. 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18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⑤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법 제21조 제2항 제10호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d. 공적시설 설비

[현행규정예시]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 등에	제24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2. 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500만원		

제 2 장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23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 지 아니하고는 태권도공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2.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태 권도공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한 자				
	국방과학 연구소법	제23조 (과태료) 제6조의 규정에 위 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 료에 처한다. 제 6 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연구소가 아니면 국방 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할 수 없다.		300만원 이하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2. 제17조에 따른 유사 명칭 사 용 금지를 위반한 자 제17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상담소·보호시설 또 는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 자 보호시설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나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00만원 이하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가정 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아닌 자 가 당해 명칭 또는 이와 유사 한 명칭을 사용한 때	법 제22조 제1항 제2호	200만원		

e. 민간회사 내지 사적 단체

[현행규정예시]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1. 제18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제18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② 이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집합투자”, “간접투자”,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및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것의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5,000 만원 이하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2	7. 제46조를 위반하여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46조 (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법 제48조 제1항 제7호	500만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2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표시를 한 자		500만원 이하		

제 2 장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제21조 (유사명칭사용금지) 유통화 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업무를 표시함에 있어서 유통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상법 제28조	제28조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제20조와 제23조제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4. 제20조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을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4.10, 1995.12.29>		200만원 이하		

f. 의료기관

[현행규정 예시]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지역 보건법	제26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8> 2. 제21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제21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 각각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00만원 이하		

제 2 절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기준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제 5 조 (지방의료원의 명칭 등) ②이 법에 의한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00만원 이하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7 삭제 <2009.4.29>	제92조 (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42조 (의료기관의 명칭) ③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00만원 이하		

g. 위원회

[현행규정예시]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000만원 이하		

제 2 장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제17조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27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제2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000만원 이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7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7. 제43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43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진실화해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000만원 이하		
	일제강점하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8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18조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000만원 이하		

2) 인적요소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

[현행규정예시]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기술사법	1.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사사무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1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무소등록기술사가 아닌 자는 기술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500만원 이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법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의 명칭에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	법 제71조 제2항 제3호	3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56. 지도사에 대한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반(법 제52조의8) 제52조의8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자는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자가 지도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자가 동 지도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	300 100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4	1.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사무소·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노무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100		

제 2 장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2.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이 아닌 자가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노무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관세사법	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제25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등 또는 관세사회가 아닌 자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또는 관세사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00만원 이하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 6 조 (동일한 명칭의 사용금지) 위생사가 아니면 위생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00만원 이하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21조 (과태료) ①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증을 대여·양도한 자 또는 대여·양도 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 7 조 (청소년증) ② 청소년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0만원 이하		

(4) 표시의무위반

1)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위생·보건·식품·환경 등에 관한 표시의무

a. 단순표시의무 위반 또는 허위-거짓으로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허위-거짓인 경우에 보다 중하에 처분양정을 하도록 정비한다.

[현행규정 예시]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제14조 (분리배출 표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포장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법 제41조 제1항 제4호	50만원	150만원	
		제20조 (과태료) ① 5.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제11조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	500만원 이하			

제 2 장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p>매업자에 의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축산물가공처리법』제24조에 따른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쇠고기 또는 식육의 판매표시판 등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하나의 개체식별쇠고기에 대하여 하나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묶음번호(다수의 개체식별번호이거나 개체식별번호 외의 번호 또는 이를 새로운 기호로 대체한 것을 말한다)로 표시할 수 있다.</p>				

- b. 원산지표시의무위반의 경우에 있어 국민의 식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은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때문에 “OO원 이상 OO원 이하”와 같은 집행공무원의 재량권 행사의 폭을 과도히 인정하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구체적으로 그 부과금액을 명시토록 정비한다.

[현행규정예시]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수산물 품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6		<p>라.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자</p> <p>제10조 (원산지의 표시) 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p>	<p>법 제56조 제1항 제1호</p>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p>마. 법 제10조제3항 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p> <p>제10조 (원산지의 표시) 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의 선정,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 ② 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대상 품목의 선정,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법 제56조 제1항 제1호의2</p>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p>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전자변형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자</p> <p>제11조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 ①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생산하여</p>	<p>법 제56조 제1항 제2호</p>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제 2 장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수산물에 유전자변형수산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농산물 품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p>아.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p> <p>第15條 (原産地의 표시)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農産物의 流通秩序 確立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大統領令이 정한 경우에는 農産物 및 그 加工品을 販賣하거나 加工하는 者에 대하여 그 原産地를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原産地를 표시하도록 한 農産物 또는 그 加工品을 販賣하거나 加工하는 者는 당해 農産物 및 그 加工品의 原料에 대하여 原産地를 표시하여야 한다.</p> <p>第16條 (遺傳子變形農産物의 표시)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消費者에게 올바른 購買情報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大統領令이 정한 경우에는 遺傳子變形農産物을 販賣하는 者에 대하여 遺傳子變形農産物임을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遺傳子變形農産物임을 표시하도록 한 農産物을 販賣하는 者는 당해 農産物에 대하여 遺傳子變形農産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p>	법 제38조 제1항 제3호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2) 국민의 원활한 경제활동과 관련된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단순 표시의무위반과 거짓-허위인 경우를 구별하여 거짓-허위인 경우에는 보다 중하게 처벌토록 규정한다. 또한 규정이 “00원 이상 00미만” 등으로 규정된 경우 부과금액을 구체화하여 정비토록 한다.

[현행규정예시]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15. 법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급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또는 등급표시의 방법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제65조 (표시의무) ①영리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마다 제작·수입 또는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류된 등급 및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98조 제2항 제8호	300만원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4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 20 만 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 원 이상 250만원 미만		

제 2 장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p>제1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⑤ 옥외광고업자는 영업소 안에 광고물 등의 설치 종류·장소 및 시기, 그 밖에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p> <p>⑥ 옥외광고업자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번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영업소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p>		·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p>5.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실명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p> <p>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p> <p>제16조 (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할 광고물 등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p>		·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절차상 선행되어야 할 절차의무(승인·인증·인가 등)를 거치지 아니한 표시의무위반의 경우 그 의무위반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부과금액을 정비토록 한다.

[현행규정예시]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를 한 자 제15조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00만원 이하		
	전파법	제90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2. 제46조제3항(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형식검정 합격 표시, 형식등록 표시 또는 전자파적합등록 표장을 부착하지 아니한 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에 설치한 자 제46조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등) ③ 제2항에 따른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대상기기는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후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형식검정 합격표시나 형식등록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 (전자파적합등록) ② 전자파적합등록 대상 기기에 관하여는 제4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6조제3항 중 “형식검정 합격표시”	법 제90조 제3호의2	300만원 이하		

제 2 장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또는 “형식등록표시”는 “전자파 적합등록 표시”로 보며, 제46조제 6항의 “제45조 및 제47조의2”는 “제56조”로 본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5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홍보를 한 자 제11조 (인증표시)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지능형 로봇 생산자는 지능형 로봇, 포장 등에 인증받은 로봇제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49조 제1항 제1호	300만원		
	공중위생 관리법 시행령 별표2	6.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업 소표시등을 설치한 자 제11조의5 (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 제한) 누구든지 시·군·구에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할 수 없다. 13. 법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한 자	법 제22조 제1항 제6호	70		
	國民健康 增進法 시행령 별표5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제 9 조 (금연을 위한 조치)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4.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50	100	200

4) 해운, 항만, 철도, 도로 등 이용시설에 대한 국민 이용편의 또는 공적관리를 위한 표시의무위반의 경우 그 위반이 즉각적인 조치를 통하여 시정되어질 수 있는 성격인 경우 차수규정을 신설하여 차등적으로 규정토록 한다.

[현행규정예시]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철도사업법	제51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철도차량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철도사업자 제18조 (철도차량표시)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철도차량에 철도사업자의 명칭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500만원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1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 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제18조 (선박식별번호) ① 제3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제항해선박은 개별 선박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번호(이하 “선박식별번호”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300만원 이하		
	선박법 시행령 별표	1. 선장(소형선박의 선장은 제외한다)이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국기게양과 표시) 한국선박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고 그 명칭·선적항·흘수의 치수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법 제35조 제1항	200만원		

제 2 장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p>3. 선박소유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사항을 선박에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p> <p>제11조 (국기계양과 표시) 한국선박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고 그 명칭·선적항·흘수의 치수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4.15, 2008.2.29></p>	<p>법 제35조 제2항 제2호</p>	100만원 (소형선박의 경우에는 20만원)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5	<p>14. 법 제60조를 위반하여 어장 또는 어구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설치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자</p> <p>제60조 (표지의 설치 및 보호) ① 행정관청은 어업자에게 어장·어선 및 어구의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법 제99조 제1항 제14호</p>	70만원		
	어선법 시행령 별표	<p>2.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의 명칭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어선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한 자</p> <p>제16조 (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①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어선에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 및 흘수(흘수)의 치수 등(이하 “명칭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여야 한다.</p>	<p>법 제53조 제1항 제2호</p>	30만원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별표4	2.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제17조 (자동차 표시)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법 제94조 제2항 제2호	20만원		

(5) 작위의무위반

명령적 행정행위에 관한 개념은 일반적으로 “국민이 날때부터 가지고 있는 활동의 자유에 제한을 과하고, 일정한 작위·부작위를 명하거나 그 의무를 해제하는 행위로 이해된다. 명령적 행위는 자유권의 제약이므로 법률에 기속되는 경우가 많다. 하명으로 총칭되어지며, 이에는 국민에 대하여 작위(---할것), 부작위(---을 하지 말것)으로 대표된다. 이와 같은 명령적 행정행위에 있어 작위의무에 해당되는 작위의무에 관하여, 현행 법령에서는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용어를 통한 유형적 분류가 용이하지 않다. 때문에 명령적 행위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효과에 따라 이를 분류하고 그 처분양정을 검토하도록 한다.

1) 선행적 행정절차(신고, 변경신고), 변경된 사실 또는 조직구성·운영에 관련된 사항의 변경에 따른 업무의 이행을 명하는 경우 (변경명령)

[현행규정예시]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태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약관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제12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이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공정경쟁 또는 공공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들에게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000만원 이하		
	전자거래 기본법	제46조 (과태료)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제31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준칙의 변경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1조의8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등)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업무준칙의 내용이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의 안전성 및 정확성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게 업무준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000만원 이하		

제 2 절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기준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p>5. 제3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p> <p>제348조 (감독) ①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변경·이전·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1,000만원 이하		
	전자서명법	<p>제34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1.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제25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준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4항(제25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500만원 이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 (과태료) ①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제86조 제1항	300만원 250만원		

제 2 장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시행령 별표 2	가. 고의나 상습적인 경우 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경우 제29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계획 수립 등)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 의무위반자로부터 야기된 구체적 행정적 사실상태 또는 업무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명령적 행위 (조치명령)

[현행규정 예시]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저작권법	제142조 (과태료) ① 제104조 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제106조 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33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		3,000 만원 이하		

제 2 절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기준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우 당해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제30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제11조 (보호조치 명령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 또는 권고할 수 있다. 2.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분석하여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0 만원 이하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8	6의5.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0조 (수질검사 등)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 그 수질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 제39조 제6호의5	400 만원		

제 2 장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7.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6조 (자원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②주무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 제41조 제1항 제10호	300만원 이하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4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0조 (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수입검사) ③ 유전자 변형생물체가 담겨 있는 국제우편물을 받은 자는 그 유전자 변형생물체가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300만원		
	장애인 복지법	제89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	법 제89조	200만원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시행령 별표 4	<p>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32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반환 명령을 거부한 자</p> <p>제32조 (장애인 등록)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p>	제1항 제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p>제41조 (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29></p> <p>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제15조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등)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100 만원 이하		

3) 의무위반자의 위법한 행위의 결과에 대한 교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위법한 행위의 결과에 대한 전보적(반환, 원상복구)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명령적 행위 (시정명령)

[현행규정예시]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p>제17조 (과태료) ① 제16조의 시정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가. 법 제6조를 위반하여 지상파 디지털 튜너를 내장하지 않은 자가 법 제16조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p> <p>나.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 안내문을 붙이지 않은 자가 법 제16조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p> <p>제16조 (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조를 위반하여 지상파 디지털 튜너를 내장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 안내문을 붙이지 아니한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법 제17조 제1항	5,000만원	7,000만원	10,000만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p>11.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제48조의2 (침해사고의 대응 등)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1,000만원 이하		
	전기통신 기본법	제53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0.		1,000만원 이하		

제 2 절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기준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1.28, 2002.1.14, 2002.12.26> 5.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27조 (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설치된 전기통신설비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2.29>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8	6의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5조 (원상복구 등)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 동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39조 제6호의2	500만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과태료) ② 제14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4조 (취업보호 등) ② 제1항에 따른 취업보호 실시와 관련하여 취업보호 실시기관, 국가기관 등의 채용의무, 국가기관 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기업체 등의		300만원 이하		

제 2 장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우선고용 의무, 업체 등의 신고, 보훈특별고용, 경력기간의 합산 및 차별대우 금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2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제48조 (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4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3조 (검사·질문 등)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나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재활시설운영자나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법 제48조 제3항 제4호	150만원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 별표 4	제5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 제33조제1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동집배송센터 사업자 제33조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및 시설·운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법 제52조 제1항 제5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제 2 절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기준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p>제27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제16조 (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①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등을 비치하여 장애인등이 당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3조 (시정명령등) ①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법 제27조 제1항 제1호	100만원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규정에 따라” 등으로 표현되는 포괄 위임적 명령행위는 법리적 논의에 근거 삭제함을 정비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현행규정예시]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은행법	제69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4.27, 2008.2.29>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금융기관		5000만원 이하		
		제69조 (과태료) ②금융기관의 임원 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때		1,000만원 이하		

5)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행정조사 또는 검사를 위한 의 무위반자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일정장소에서의 동행을 명하는 경우 (동행명령)

[현행규정예시]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의문사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제8항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		1,000만원 이하		

제 2 절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기준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p>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자</p> <p>제22조 (조사의 방법) ⑧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p>				
	<p>일제강점하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p>	<p>제35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p> <p>제21조 (조사의 방법) ⑧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자 중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p>		1,000만원 이하		
	<p>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p>	<p>제47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p> <p>제24조 (동행명령 등) ①위원회는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 중 반민주적·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에</p>		1,000만원 이하		

제 2 장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p>제78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1.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요청이나 출석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p> <p>제 6 조의4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③위원회는 공익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1,000만원 이하		

6) 자연재해 또는 인위적-기술적 요소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건강, 개인정보 등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위한 기준 등의 정검 또는 정비, 대피 등 안전관리에 관한 명령

[현행규정예시]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전기통신 기본법	제53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27조 (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 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설치된 전기통신설비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000만원 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제46조의3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6조의3 (정보보호 안전진단)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결과와 제5항에 따른 통보내용에 따라 필요하면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사업자에게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1,000만원 이하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 4	1의2.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안전공사의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제66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⑤ 안전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결과를 통지한 사항을 점검한 결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통지를 받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자	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의2	200만원		

제 2 장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p>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중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개선명령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후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자연재해대책법	<p>제79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재해예방을 위한 점검·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제12조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기관 또는 해당 지구에 속해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예방에</p>		300만원 이하		

제 2 절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기준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p>필요한 한도 안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p> <p>3의2. 제25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의 재해예방을 위한 점검·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제25조의3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②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해당 지구에 속해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300만원 이하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 4	<p>1의3.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한 명령에 위반한 자</p> <p>제71조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3조 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그 전기설비 또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를</p>	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의3	200만원		

제 2 장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포함한다)에게 그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그 사용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p>제8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1. 제40조제1항(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자</p> <p>가. 대피명령을 위반한 경우</p> <p>나. 대피명령을 방해한 경우</p> <p>제40조 (대피명령) ①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이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41조 내지 제43조 및 제45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지역안의 주민이나 당해 지역안에 있는 자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제46조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①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40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p>	법 제40조 제1항	1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제 2 절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기준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2. 제41조제1항제2호(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자 가. 위험구역 내의 대피명령을 위반한 경우 나. 위험구역 내의 퇴거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 위험구역 내의 대피·퇴거명령을 방해한 경우 제41조 (위험구역의 설정) ①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방지 또는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는 자외의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법 제41조제1항제2호	10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7) 건전 상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불건전한 또는 위법적 요소를 가진 물품에 대한 반출 또는 폐기에 관한 명령(반출-폐기명령)

[현행규정 예시]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저작권법	제142조 (과태료) ①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제106조의 규정		3,000 만원 이하		

제 2 장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p>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제133조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의 전송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p>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p>제70조 (과태료)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4.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세관장의 국외반출명령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제40조 (물품의 폐기) ①세관장은 자유무역지역안에 있는 물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화주 및 반입자와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국외반출 또는 폐기를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미리 통보한 후 직접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화주등에게 통</p>		100만원 이하		

제 2 절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기준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p>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을 폐기한 후 지체없이 화주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2. 부패 또는 변질된 물품 3. 유효기간이 경과된 물품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6) 부작위의무 위반 (금지)

1) 인적지위

[현행규정예시]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p>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p>	<p>제449조 (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3></p> <p>18. 제348조(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자</p> <p>제348조 (겸직금지) 종합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p>		<p>1,000 만원 이하</p>		

제 2 장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47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6.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제35조 (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의하여 규명된 사실을 이유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1,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협동 조합법	제141조 (과태료) ②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기인·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62조 또는 제66조제3항(제85조 또는 제9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때 제62조 (임원의 겸직 금지) ①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③상근 이사는 해당 조합 외의 다른 상근직을 겸직할 수 없다. 제66조 (임원 개선의 청구) ③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이사장은 총회 회의일의 7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개선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0만원 이하		

2) 지역적 제한

[현행규정예시]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자연환경 보전법	<p>제66조 (과태료)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1. 제16조(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p> <p>제16조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p> <p>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p> <p>2.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한다)</p>		200만원 이하		

제 2 장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p>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p> <p>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풀·나무의 채취 및 벌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p> <p>제22조 (자연유보지역) ②자연유보지역의 행위제한 및 중지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제2항·제5항,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무장지대안에서 남·북한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시하는 평화적 이용사업과 통일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통일정책관련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자연 공원법 시행령 별표 3	<p>제8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4.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자</p> <p>가. 차량·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한 자</p> <p>나. 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자</p> <p>제27조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p>	법 제86조 제1항 제2호	100만원 50만원	150만원 75만원	200만원 100만원

제 2 절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기준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자연 공원법 시행령 별표 3	<p>5.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자</p> <p>가.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자</p> <p>나.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자</p> <p>제29조 (영업 등의 제한 등)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이용·보안 및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구역에서의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p>	법 제86조 제1항 제3호	50만원 20만원	100만원 40만원	150만원 60만원
	자연 공원법 시행령 별표 3	<p>제86조 (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2.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자</p> <p>제28조 (출입 금지 등)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p> <p>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p> <p>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우</p>	법 제86조 제2항 제2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제 2 장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자연 공원법 시행령 별표 3	<p>제86조 (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27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p> <p>제27조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p> <p>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p> <p>9.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p> <p>10.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p>	법 제86조 제3항 제1호	10만원	10만원	10만원

(7) 검사를 방해. 기피. 회피

이는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청의 행정조사 내지 지도·감독에 대한 의무위반사유이다. 행정청이 출입·조사를 하는 목적이 관련 분야 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지도·감독적 성격을 가지는 일반적 정보의 수집인 경우와 구체적 영업의 규제권 발동을 위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로 구분하여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이는 사실 그 구분이 어려우며 검사를 방해·기피·회피하는 위반행위는 자료의 미제출·허위제출과 관련 함께 규정되고 있어 더욱 그

구분에 대한 고려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와 같은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세분화보다는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그 처분양정을 검토하여 일반기준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도시 개발법 시행령 별표2	10.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지정권자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법 제85조 제1항 제3호	800만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2. 제5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4조(감독)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상황이나 회계상황을 조		500만원 이하		

제 2 장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p>사하게 하거나 장부를 비롯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26. 제6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제61조(보고와 검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사업이나 그 화물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p> <p>1. 제3조제5항, 제24조제4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2. 화물운송질서 등의 문란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3. 운수사업자의 위법행위 확인 및 운수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2	<p>2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p> <p>제21조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③ 시·도지사는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p>	법 제54조 제3항 제3호	300만원		

제 2 절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기준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조치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별표	제23조 (과태료) ①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기피한 자,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6조 (업무의 지도·감독 등)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인력개발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200만원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별표	4.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한 경우 第24條 (監督等) ①勞動部長官은 基金을 監督하며 必要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基金에 대하여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指示 또는 命令을 할 수 있다. ②勞動部長官은 必要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基金에 대하여 그 業	법 제30조 제1항 제3호	40만원		

제 2 장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p>務, 會計 및 財産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基金의 帳簿, 書類 기타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p> <p>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8) 허위자료 및 자료미제출

1)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허위제출한 경우를 구분하여 허위제출한 경우에 보다 중하게 부과기준을 규정하도록 한다.

[현행규정예시]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p>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p>	<p>제30조의2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2.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의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p> <p>제27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개정 1995.1.5>) ①</p>		<p>3천만원 이하</p>		

제 2 절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기준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회의개의 및 의결정족수) 내지 제45조(위원의 기명·날인) 및 제52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를,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진속관할에 관하여는 동법 제53조(이의신청) 내지 제55조의2(사건처리절차등)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6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국내인정기관 제16조(환경경영체제의 인증 등) ⑥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인증 수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천만원 이하		
	도시개발법 시행령 별표2	9.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지정권자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	법 제85조 제2항 제7호	300만원		

제 2 장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p>8.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p> <p>제50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2조 내지 제45조 및 제52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 준용한다.</p> <p>②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사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③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3조·제53조의2·제54조·제55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제49조에 의하여 위임된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 준용한다.</p>	법 제58조 제1항 제8호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제 2 절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기준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p>아. 법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자료·물건을 제출한 자</p> <p>제21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2조·제24조·제25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시정조치, 영업정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개발업자(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경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2.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p> <p>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p>	법 제40조 제2항 제6호	200 만원	500 만원	1000 만원

제 2 장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물류 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p>2.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p> <p>제61조 (보고) ① 국토해양부장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복합물류터미널의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합물류터미널의 건설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자에게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게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법 제67조 제1항	150만원		
	토양환경보전법 별표3	<p>12.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p> <p>제26조의2 (보고 및 검사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p>	법 제32조 제1항 제12호	100	150	200

제 2 절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기준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p>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의 보존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별표15	<p>24.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p> <p>제82조 (보고와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나 제32조제3항에 따른</p>	법 제94조 제2항 제9호	60만원	80만원	100만원

제 2 장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p>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제32조제7항에 따른 사항만 해당한다), 제62조와 제63조에 따른 검사업무와 제64조에 따른 검사업무대행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검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 2. 제41조제1항에 따라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유류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 3. 제42조에 따라 연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당한 자 4.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5. 제44조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6. 제46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 7. 제62조제2항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업무나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 8. 제74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개선결과의 확인업무를 위한 확인검사 대행자 				

제 2 절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기준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p>9. 제77조에 따라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나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p> <p>10.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p>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p>다.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p> <p>제20조 (출입·검사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하거나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1. 동물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p>	법 제26조 제1항 제5호	30만원		

2) 자료미제출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처분양정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토록 한다.

[현행규정 예시]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p>제20조 (과태료) ①사업자등이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p>		1천만원 이하		

제 2 장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p>며,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29></p> <p>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p> <p>제 5 조 (표시·광고내용의 실증등)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들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p>제38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제38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1.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공·철도사고등과 관계가 있는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 또는 지연시킨 자</p>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500만원		
	방송법 시행령 별표4	<p>23. 법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거부한 자</p> <p>第90條 (放送事業者의 義務) ①綜合</p>	법 제108조 제1항 제23호	300만원		

제 2 절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기준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p>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第88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視聽者委員會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p> <p>②視聽者委員會는 放送事業者가 視聽者委員會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의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視聽者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視聽者委員會가 第88條第1項各號의 規定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p>제32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3의2.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p> <p>제14조 (수입폐기물 처리결과 등의 통보) 수입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의</p>		100만원 이하		

제 2 장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수령 및 처리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법 시행령 별표	<p>제41조 (과태료) ①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7. 제28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p> <p>제28조 (통계의 보급)</p> <p>③통계청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통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베이스자료 등 세부적인 통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법 제28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p> <p>8.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p> <p>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p>	<p>법 제41조 제2항 제7호</p> <p>법 제41조 제2항 제8호</p>	50	100	150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별표2	<p>제28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②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간행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p>	법 제28조 제2항	20만원		

제 2 절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기준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0조 (간행물의 제출) ①출판사를 경영하는 자는 소설·만화·사진집 및 화보집(이하 이 조에서 “소설등”이라 한다)을 발행한 때에는 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간행물 2부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출판물(디스크 등 유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그 전자출판물의 파일 1부를 전송하거나 유형물에 고정시켜 제출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9) 공고 또는 게시의무 위반

1) 일정한 건설현장 등에 대한 국민의 신체-건강-생명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규정예시]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 6 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법 제25조 제3항 제1호	400만원		

제 2 장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별표4	<p>준수 등)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관리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연구실별 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및 그 책임과 권한의 부여 3. 주기적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5. 사고발생시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6.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전기공사사업법 시행령 별표 5	<p>제4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제24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지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자 <p>제24조 (전기공사 표지의 게시 등)</p> <p>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현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시공자, 전기공사의 내용,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p>	법 제46조 제1항 제8호	200만원		

제 2 절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기준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② 공사업자는 수급한 전기공사를 완공하면 시공자, 전기공사의 내용,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표지판을 주된 배전반에 붙이거나 확인하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	<p>제100조 (과태료) 2의2.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자</p> <p>제42조 (건설공사표지의 게시) 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②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설계자·감리자 및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p> <p>6의2.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자</p>	법 제100조 제2호의2	50		

2) 영업장등에 있어 게시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의 이용과 시설사용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현행규정예시]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43조	<p>제43조 (과태료)</p> <p>5.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자</p> <p>제19조 (필요적 게재사항)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당해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그 명칭·주소·등록번호·등록연월일·제호·간별·발행인·편집인·인쇄인·발행소 및 발행연월일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 또는 공표하여야 하며, 수인의 편집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의 경우 간별·인쇄인·발행소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2천만원 이하		
	방송법 시행령 별표4	<p>1.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책임자의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지 아니한 자</p> <p>第 4 條 (放送編成의 자유와 독립)</p> <p>③放送事業者는 放送編成責任者를 선임하고, 그 姓名을 放送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公表하여야 하며, 放送編成責任者의 자율적인 放送編成을 보장하여야 한다.</p>	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500만원		
	선박안전법 제89조	<p>제89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2.6></p>		200만원 이하		

제 2 절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기준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p>2. 제1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된 도면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p> <p>제13조 (도면의 승인 등) ④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도면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p>				
	온천법 제37조	<p>제37조 (과태료)</p> <p>1.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와 음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p> <p>제19조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의 결과와 온천의 온도, 금기증, 목욕용 또는 음용상의 주의사항을 온천이용시설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p>		200만원 이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0	<p>2.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p> <p>제 8 조 (신고필증 등의 게시) ①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②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p>	법 제28조 제2항 제2호	100		

제 2 장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p>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5.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p>				
	<p>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p>	<p>하.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p> <p>제 9 조 (대부조건의 게시 등) ① 대부업자는 대부이자율·이자계산방법·변제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영업소마다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대부계약의 체결시 거래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p>	<p>법 제21조 제1항 제7호</p>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p>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p>	<p>2. 법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p> <p>제 5 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④ 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내용을 그 마을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p>	<p>법 제28조 제2항 제2호</p>	40만원		
	<p>선박법 시행령 별표</p>	<p>2. 선박소유자(소형선박의 소유자로 한정한다)가 법 제10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의 비치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p> <p>제10조 (국기계양과 항행) 한국선박은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p>	<p>법 제35조 제2항 제1호</p>	30만원		

제 2 절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기준

번호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적증서를 선박안에 비치하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의 국기를 게양하거나 항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1.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제17조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중개수수료 요율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29> 가.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 제3항 제1호	30		

4.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세부기준

(1) 행정질서벌의 비제재화 방안

1) 동일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영업정지, 벌금, 과징금 병과

행정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의 과태료와 기타 다른 성격의 제재수단을 병과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지로써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효과를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고려되어진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국민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과잉제재적 효과를 발생하고 이는 곧 국민과 행정청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아래에서는 범규정상 병과되는 경우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①과태료-영업정지, ②과태료-벌금, ③과태

료-과징금) 이에 대한 분석과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 과태료- 영업정지 병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63개 법률)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병과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입법태양별로 구분하여 본다면, ①과태료-경고 또는 시정명령(제1차처분),②과태료- 영업정지, ③과태료- 취소의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 과태료-경고(제1차처분)

법령명	규정내용	과태료			영업정지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4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의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300만원 이하			경고	업무정지 3월	상당소·교육훈련 시설의 폐지 또는 보호 시설의 안기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 제25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100만원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법 제2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00만원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1)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30만원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b) 과태료-영업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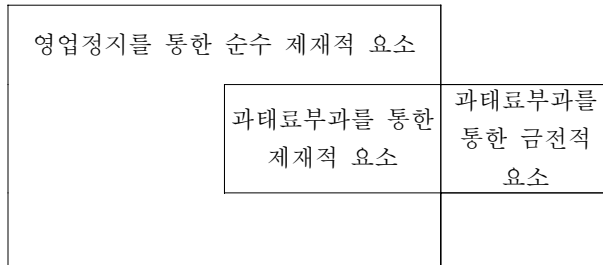
법령명	규정내용	과태료			영업정지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4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을 겸업한 경우	200만원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국내: 영업정지 1년 국제: 등록취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만원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조사나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200만원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c) 과태료-취소

법령명	규정내용	과태료			영업정지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4차
건설기술관리법 법 제25조제2항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업무정지를 받았으나 그 업무정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200만원			등록취소			

a의 경우는 다시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차수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와 두고 있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사실상 과태료와 다른 제재수단(행정제재처분상 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의 준법률적행위)의 병과라고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경우라 할 것이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유형은 제외토록 한다.

b와 같은 유형이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영업의 정지는 의무위반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요소이며 이에 대하여 또 다시 제재적 요소와 사실상의 금전적 이득에 대한 박탈적 요소를 함께 가지는 과태료의 부과는 과잉제재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임. 때문에 과잉금지적 요소의 제거를 통한 국민의 법감정 및 법인식의 고양을 통한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영업정지로써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효과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부과 규정을 삭제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고려되어 진다.



※ : 과잉적 제재로서 사실상 국민의 입장에 있어 이중제재로 인식.

c의 유형은 벌금- 취소와는 달리 과잉제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본 연구의 주된 정비대상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태료-영업정지를 병과한 법률에 대하여 정비방안으로서는 그 제재대상이 되는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식화해 볼 수 있다.

의무위반의 유형	개선방안
1. 보고·신고·자료제출 등 단순 경미한 의무위반	과태료
2. 인적·물적 시설요건, 준수 의무, 명령위반 등 영업 관련 중요 의무 위반	영업정지
3.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등과 관련된 중대한 의무 위반 등	과태료와 영업정지

※ 첨부 3참조

2) 과태료-벌금 병과(『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률)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와 벌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사실상의 효과를 야기함이 현실인바, 이는 법리적으로는 국가 입법권 남용 우려와 아울러 실무적 측면에 있어 국민의 법감정을 심히 왜곡화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한 정비안으로써는 그 행위유형에 따라 구성요건이 동일한 경우와 과태료 부과 구성요건에 다른 구성요건이 추가되어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단순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벌금 폐지함을, 후자의 경우에는 중대한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벌) 부과 시 과태료 제외함을 원칙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 첨부 4참조)

3) 과태료-과징금 병과(『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35개 법률)

과태료와 과징금은 처분목적이나 법적 성격이 달라 법리상 중복부과가 가능하나, 과태료와 과징금 모두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갖고 있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두 번 이상 금전을 내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며, 그 불복절차도 서로 달라 이중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여 과잉금지 원칙 위반 우려가 있어 그 정비가 요망된다.

이에 대한 정비안으로써는 우선적으로 과태료와 과징금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이 현저히 커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면 금액이 큰 제재를 기준으로 하되, 먼저 부과된 금액이 있으면 공제함을 원칙으로 하여, 하나의 제재 부과 시 다른 제재 적용 배제함을 기준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5첨부 참조)

4) 불필요한 휴·폐업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삭제

국민의 정부시절 규제개혁의 관점에서 종전의 허가의 대상들이던 규정들이 다수 신고로 전환되어진 바 있었다. 이에 따라 신고에는 허가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단순히 행정기관에 대하여 알리는 수준에 불과한 정도의 것도 있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알리는 수준에 불과한 신고의 경우,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무위반에 대한 법적효과에 있어 변함없이 허가기준과 신고의 의무위반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거나 특히 국민의 입장에 있어 그 필요성이 의문시되는 폐업신고 의무위반으로 처벌되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개별 법령에서 휴업·폐업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의 미신고로 인하여 타인의 권익 또는 공익에 심대한 불이익을 야기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시에는 이를 폐지함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고자 한다. 아울러 타인의 권익 또는 공익에 심대한 불이익을 야기할 우려가 인정될 시라도 과태료부과를 통한 법익에 비하여 의무위반자가 받게 되는 경제적 침익이 과도하다고 인정될 수 있거나 법령에서 휴업·폐업신고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수규정을 신설하고 제1차 처분에 있어 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을 규정하고 부과액에 차등을 두어 규정하도록 한다.

[현행 규정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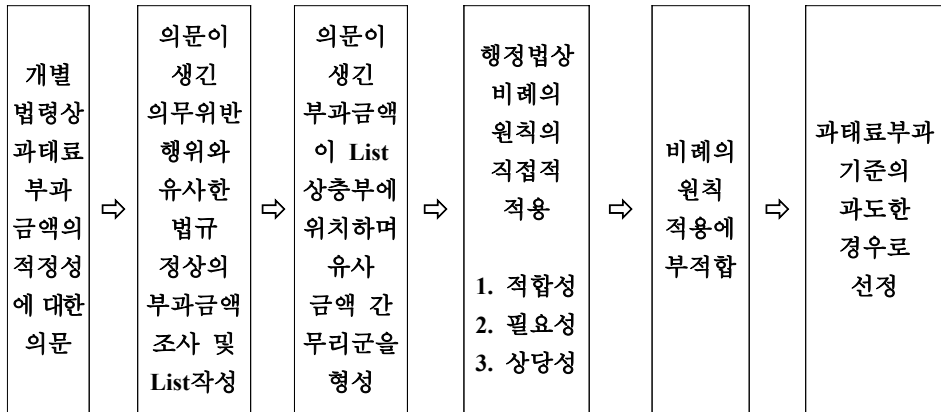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p>바.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제 5 조 (변경등록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는 동조제2항 각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p> <p>②대부업자가 영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p>1. 법 제7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p> <p>제78조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을 1월 이상 정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법 제160조 제1항 제1호	100만원		

(2) 부과기준이 과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과태료란 행정법상 의무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서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목적에 침해하지 않으나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을 정도의 단순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로 이해되고 있다. 때문에 다른 제재적 수단에 비하여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금이 국민의 입장에서 법감정에 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보다 강한 특징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제에 있어 이러한 관점에 반하는 경우가 있어 정비를 요하는 것이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과도한 경우라 함은 그 부과금액의 산정에 있어 의무위반행위의 성격과 부과금이 행정법상 일반원칙인 소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와 부과금액의 규정시 집행공무원에게 과도한 재량권 행사의 여지를 주고 있는 경우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첫 번째의 경우는,



로써 도식화 되어질 수 있으며, 정비대상으로는 비제재화에 속하지 않는 과태료 부과기준의 전체에 해당할 수 있다.

만일 과태료 부과기준의 과도한 경우로 선정된 경우의 정비방안은 ① 가중·감경 제도의 구체화를 통한 정비, ② 차수규정의 신설을 통한 정비로 귀결되어 질 것이다.

[현행 규정 예시]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 3 조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①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300만원 이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 6 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연구실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법 제25조 제3항 제1호	400만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8항		1,000만원 이하		

제 2 장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제21조 (조사의 방법) ⑧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자 중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과태료부과기준이 과도한 경우로서 고려되어질 수 있는 또 다른 경우는, 현행규정예시와 같은 과태료부과기준상 동일 의무위반행위에 큰 폭의 부과금액을 규정함으로 인해 집행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의 폭을 과도하게 넓힘으로 인해 의무위반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규정은 현행 관련 법령에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비는 무엇보다 그 폭을 줄이거나, 또는 과태료 금액을 유사 의무위반행위의 그것과 비교하여 확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규정 예시]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4	11.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가스 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43조 제1항제5호	1000		

제 2 절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기준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한국투자공사법	-		500만원 이하		
한국주택금융 공사법	-		500만원 이하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별표2	-	법 제52조 제1항	2000만원		
한국전력공사법	-		200만원 이하		
예금자보호법 제44조	-		200만원 이하		
한국석유공사법	-		200만원		
집단에너지사업법	-	제60조 제1항제3호	200만원 이하		
한국토지공사법	-		100만원 이하		
항만공사법	-		100만원 이하		
한국철도공사법	-		100만원 이하		
한국수자원공사법	-		100만원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3	-	법 제60조 제1항제3호	100만원		
전기공사공제조합 법 시행령 별표	-	법 제54조 제1호	80만원		
한국광물 자원공사법	-		50만원 이하		

과태료규정은 다른 행정제재처분에 비하여 금전벌적 형태를 가지고 있음이 특징이다. 때문에 부과금액 규정에 있어 집행공무원의 재량적 권한과 관련하여 명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있어 이와 같은 명확성에 반하는 규정이 있어 이의 정비가 요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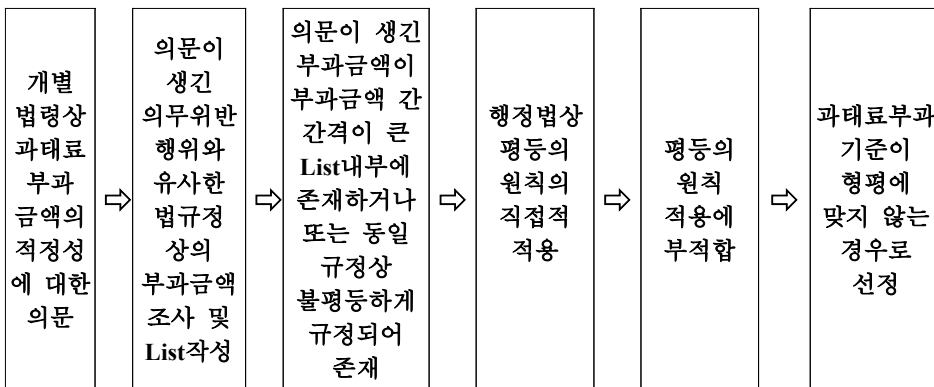
[현행 규정 예시]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수산물품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6	라.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자	법 제56조 제1항 제1호	5만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3) 부과기준 간 형평이 맞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기준은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의무위반자 간 그리고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법령 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있어서는 이러한 형평성의 유지에 반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시 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라 함은 그 부과금액의 산정에 있어 의무위반행위의 성격과 부과금이 행정법상 일반원칙인 소위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로서,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법령간 불평등 또는 동일 규정 내에서의 유사한 의무위반행위 간 불평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의 경우는,



로써 도식화 되어질 수 있으며, 정비대상으로는 비제재화에 속하지 않는 과태료 부과기준의 전체에 해당할 수 있다.

만일 과태료 부과기준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로 선정된 경우의 정비방안은,

- ① 가중·감경 제도의 구체화를 통한 정비, ② 차수규정의 신설을 통한 정비, ③ List 하층부에 존재시 삭제 검토 등이라 할 것이다.

[현행 규정 예시]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4	11.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43조 제1항 제5호	1000		
한국투자공사법	제41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제 8 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투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500만원 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8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 8 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500만원 이하		

제 2 장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별표2	<p>제52조 (과태료) ① 제50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제50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12.21]</p> <p>법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농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p>	법 제52조 제1항	200만원		
한국전력공사법	<p>제21조 (과태료)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한국전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제 8 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전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30]</p>		200만원 이하		
예금자보호법 제44조	<p>제44조 (과태료)</p> <p>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p> <p>제 7 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200만원 이하		
한국석유공사법	<p>제20조 (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제 6 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석유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8.3]</p>		200만원		

제 2 절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기준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0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2.8> 3.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제3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0조 제1항 제3호	200만원 이하		
한국토지공사법	제31조 (과태료) ①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 6 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토지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100만원 이하		
항만공사법	제42조 (과태료) ①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 9 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항만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00만원 이하		
한국철도공사법	제20조 (과태료) ①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 8 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		100만원 이하		

제 2 장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7.4.6]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1조 (과태료) ①제5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 5 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7.1.19]		100만원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제60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2.8> 3.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제3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5. 법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제60조 제1항 제3호	100만원		
지적법 시행규칙 별표 10	2. 제41조의15 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가. 동일명칭을 사용한 경우 나.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41조의15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대한지적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지적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53조 제1항 제2호	150만원 100만원		

제 2 절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기준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전기공사 공제조합 법 시행령 별표	1.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1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전기공 사공제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법 제54조 제1호	80만원		
한국광물 자원 공사법	제20조 (과태료) ① 제6조를 위 반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 또 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 6 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 는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 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12.26]		50만원 이하		

아울러 동일규정 내에서의 부과기준의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의 규정에서 의무위반자 간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① 단순 미행위와 거짓·허위에 근거한 행위의 경우 이를 구분하여 단순 미행위를 보다 경하게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서 물론 양자의 행위간 어떠한 경우가 보다 중한 과실이 인정되는 지에 관하여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다수의 현행 입법례가 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단순 미행위이후 영업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있어 거짓·허위에 근거한 행위가 보다 중한 과실로서 인정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고려되어지며,

② 신고, 보고 또는 자료의 미제출 등의 의무위반사유에 있어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부과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의무위반자 간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바, 기일을 규정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정비대상으로는 특히, 변경신고의 경우를 들 수 있으며,

③ 행위위반에 있어 상습적인 경우와 일시적인 경우를 구분하여 보다 의무위반자의 위반행위의 정도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으나, 현재와 같이 과태료 부과 의무에 대한 전국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전무한 경우, 이를 구분하기는 사실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때문에 상습자와 일시적 위반자의 경우를 구분하는 정비안은 삭제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정비내용에 대한 선행 입법례를 예시한다.

① 단순 미 행위와 거짓·허위에 근거한 행위

[현행 규정 예시]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 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를 하 지 아니한 때 나. 허위보고를 한 때 다.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검 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② 기일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현행 규정 예시]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6	1. 제4조제3항 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법 제4조제3항 또는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 1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나.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다.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라. 12개월 초과외의 기간 경과	법 제31조 제1항 제1호	500만원 이하 50 100 200 300		

③ 상습적인 위반행위와 일시적 위반행위

[현행 규정 예시]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 별표2	제86조 (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7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때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였을 때 가. 고의나 상습적인 경우 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경우	법 제86조 제2항 제2호	200만원 150만원		

제 2 장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법령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제76조 (보고와 검사 등) 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실태 조사,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점검, 고용장려금 및 사업주에 대한 각종 지원, 부담금 징수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 또는 서류 검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4) 차수규정을 신설한 부과기준 마련

과태료부과기준의 합리화를 위한 입법적 정비안의 큰 축은 비제재화와 제재의 적정성 도출방안으로 축약되어 진다. 이는 위반사항의 성격을 중심으로 그 구체화내지 세분화를 통한 적정성 도출에 의미 있다. 그러나 “경미한 또는 과도한”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세분화가 용이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더욱이 법리적 측면에 있어 일반적 행정제재처분(영업정지 등)과는 달리 금전적 제재라는 특성에 기인하여 제1차 처분시 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의 처분규정을 선행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근거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집행행정청 및 법원에 감경에 대한 요건을 명문화 하였다고는 하나 실무에 있어 집행공무원 등의 입법취지에 상응하는 재량권행사 여부는 의문시 되어진다.

때문에 현행 하위법령 287건 중 62건 (Ca. 37%)의 부과기준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은 차수규정을 확대 적용하여 투명한 재량권행사에 보다 근접할 수 있는 척도를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고려되어 진다.

이와 같이 이미 다수의 개별법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차수규정의 확대적용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① 적용대상을 확정하고, ② 차수규정에 있어 입법적 형식의 주요요소인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단계적 차수 및 부과기준에서 차수산정을 위한 일정기간을 설정하고, ③ 단계적 차수에 대한 부과금액의 비율에 대한 기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① 항목의 경우, 비제재대상이 아닌 과태료 부과금액이 과도할 시에 그리고 그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고려되어지는 규정을 대상으로 하며,

② 항목의 경우, 현행 입법례에 근거하여 단계적 차수는 3차, 차수산정을 위한 일정기간은 1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③ 항목의 경우, 현행 입법례에 있어서는 그 비율이 일률적이지 않고 매우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어 기준으로 삼기에 부적합하다. 연구자는 이를 위하여 2가지 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으나, 법리상 이와 같은 제안에 있어 “징계적효과” 또는 “교정적효과”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규정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기타 다른 제재적 처분의 경우와 비교하여 제2안에 따름이 보다 바람직 할 것으로 고려된다.

기준안	비 율	비 고
제1안	1: 1.5 : 2	과태료 부과대상이 징계적효과를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교정적 성격이 강한 법규정의 경우
제2안	1: 2 : 4	과태료 부과대상이 형벌상 누범제와 같이 징계적 성격을 보다 강하게 가지는 경우

[현행 규정 예시]

[별표 3] <개정 2008.12.24>

과태료부과기준(제27조 관련)

(단위 :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1회	2회	3회 이상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1호	20	100	200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2호	50	200	300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2호	10	50	200
4. 법 제20조제1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3호	100	200	300
5. 법 제22조제4항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4호	10	100	200
6.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5호	100	200	300
7. 법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6호	3	30	100
8.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7호	10	50	200

<비고>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한다.
2.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 절 소 결

이상에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538건의 현행 법령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하여 의무위반행위를 9개로 분류하여 그 처분양정에 관한 검토와 세부적인 정비안을 제시하였다.

행절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의 과태료와 기타 다른 성격의 제재수단을 병과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지로써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효과를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고려되어진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국민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과잉 제재적 효과를 발생하고 이는 곧 국민과 행정청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연구에서는 법규정상 병과되는 경우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①과태료-영업정지, ②과태료-벌칙, ③과태료-과징금, ④과징금-벌칙) 이에 대한 분석과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휴·폐업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삭제 원칙은 현행 이를 규정한 각 개별 법률의 입법목적과 신고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으로 타당하지 않을 수 있기에 각 개별법상 휴·폐업신고의 대상이 되는 업무가 공익성을 가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삭제함이 타당함. 또한 이러한 삭제의 경우 대비안의 제시 또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기관에 대한 유사명칭사용금지 규정의 입법취지는 현대생활에 있어 인터넷의 괄목할 만한 성장 및 이용자의 법인식의 변화 그리고 법인설립에 있어 주무관청 등의 주의의무 강화 등으로 인하여 그 입법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경향에 있음. 때문에 특수법인에 해당되는 기관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은 폐지하고, 다만 해당 기관의 특별한 의무유지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존치하도록 함.” 이라는 특수법인에 대한 유사의무사용 금지의 원칙적 폐지를 논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수법인이 가지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고려 시 다소 무리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유사명칭금지 의무에 있어 현행과 같이 나타나는 부과금액간의 현격한 차이는 비제재화 방안에 대한 정비방안이라기 보다는 부과기준이 과도한 경우 또는 부과기준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로 설정함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인식되어 진다.

차수규정의 확대 적용에 관하여 연구자는 과태료부과기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정비안의 큰 축은 비제재화와 제제의 적정성 도출방안으로 축약되어지며, 이는 위반사항의 성격을 중심으로 그 구체화내지 세분화를 통한 적정성 도출에 의미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경미한 또는 과도한”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세분화가 용이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어지고, 더욱이 법리적 측면에 있어 일반적 행정제재처분(영업정지 등)과는 달리 금전적 제재라는 특성에 기인하여 제1차 처분시 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의 처분규정을 선행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을 문제의식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근거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집행행정청 및 법원에 감경에 대한 요건을 명문화 하였다고는 하나 실무에 있어 집행공무원 등의 입법취지에 상응하는 재량권행사 여부는 의문시됨을 차수규정 확대 적용을 위한 근거의 하나로서 언급한 바 있다. 이미 다수의 개별법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차수규정의 확대적용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① 적용대상을 확정하고, ② 차수규정에 있어 입법적 형식의 주요요소인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단계적 차수 및 부과기준에서 차수산정을 위한 일정기간을 설정하고, ③ 단계적 차수에 대한 부과금액의 비율에 대한 기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① 항목의 경우, 비제재대상이 아닌 과태료 부과금액이 과도할 시에 그리고 그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고려되어지는 규정을 대상으로 하며,

② 항목의 경우, 현행 입법례에 근거하여 단계적 차수는 3차, 차수 산정을 위한 일정기간은 1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③ 항목의 경우, 현행 입법례에 있어서는 그 비율이 일률적이지 않고 매우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어 기준으로 삼기에 부적합함. 때문에 연구자는 2가지 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 바 있다.

기준안	비 율	비 고
제1안	1: 1.5 : 2	과태료 부과대상이 징계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 다기 보다는 교정적 성격이 강한 법 규정의 경우
제2안	1: 2 : 4	과태료 부과대상이 형벌상 누범제와 같이 징계적 성격을 보다 강하게 가지는 경우

제 3 장 과징금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제 1 절 현행 (부당이득 환수적)과징금 규정의 법제 현황 및 검토

1. 부당이득 환수적 과징금 규정 법제 현황

2009년 5월 1일 현재 108개 법률에서 과징금을 규정 하고 있다. (영
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92건, 부당이득 환수적 과징금:16건)

[부당이득 환수적 과징금 규정 주요내용 현황표]

번호	법률명	규정주요내용										비고	
		부과 기준	부과시 고려 사항	가중- 감경	의견 제출	이의 신청	납부 유예- 분할	과징금 산정 방법	가산금	과오납금 환급	납부 기한		별 표
1	자본 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	○	○	○	○	○		○	○ (환급가산금)	60일		
2	금융 지주 회사법	○	○		○	○	○		○		60일		
3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	○	○			○	○	○	○ (환급가산금)	60일		독 점 규 제 법 준 용

제 3 장 과징금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번호	법률명	규정주요내용										비고	
		부과기준	부과시 고려사항	가중- 감경	의견 제출	이의 신청	납부 유예- 분할	과징금 산정 방법	가산금	과오납금 환급	납부 기한		별 표
4	대외 무역법	○		○							20일	○	
5	독점규 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	○	○	○		○	○	○	○ (환급가산금)	60일	○	포 상 금 지 급 자 진 신 고 감 면
6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									60일		
7	보험 업법	○	○		○	○	○		○		60일		은 행 법 준 용
8	부동 상실권 리명의 등기에 관한	○		○					○	○ (환급이자)	3월	○	이

제 1 절 현행 (부당이득 환수적)과징금 규정의 법제 현황 및 검토

번호	법률명	규정주요내용										비고	
		부과기준	부과시 고려사항	가중감경	의견제출	이의신청	납부유예-분할	과징금산정방법	가산금	과오납금환급	납부기한		별표
9	불공정 무역 행위조사 및 산업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	○				○	○	○	○ (환급가산금)	20일	○	포상금지금
10	상호저축은행법	○	○	○	○	○	○				60일		
11	은행법	○	○		○	○	○	○			60일		
12	임대주택법	○									30일	○	
13	청소년보호법	○		○			○				20일	○	
14	표사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	○		○	○	○	○ (환급가산금)	60일	○	독점규제법준용
15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	○	○	○		○	○	○	○ (환급가산금)	60일	○	독점규제법준용

번호	법 률 명	규정주요내용											비 고
		부과 기준	부과시 고려 사항	가중- 감경	의견 제출	이의 신청	납부 유예- 분할	과징금 산정 방법	가산금	과오납금 환급	납부 기한	별 표	
													용
16	환경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	○					○				30일	

2. 부당이득 환수적 과징금의 법제현황의 검토

과징금이란 행정법규 또는 행정법상 의무의 위반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자에 대하여 행정벌만으로는 그 위반을 막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행정법규위반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박탈함으로써 행정법규위반행위를 막는 효과를 가지는 금전적 행정제재처분을 의미한다.

과징금의 주된 목적은 사업자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이를 억제하는 것, 즉 위반행위의 억제가 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억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어느 정도는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에 의하고 어느 정도는 위반행위를 단순히 제재하는 방법에 의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한계적 억제의 관점에서 정책조합의 선택의 문제라고 한다. 다만 어떤 정책조합이 억제의 목적달성에 보다 비례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법인가 하는 점이 관건이므로, 기능적인 관점에서 과징금의 유효성은 위반행위 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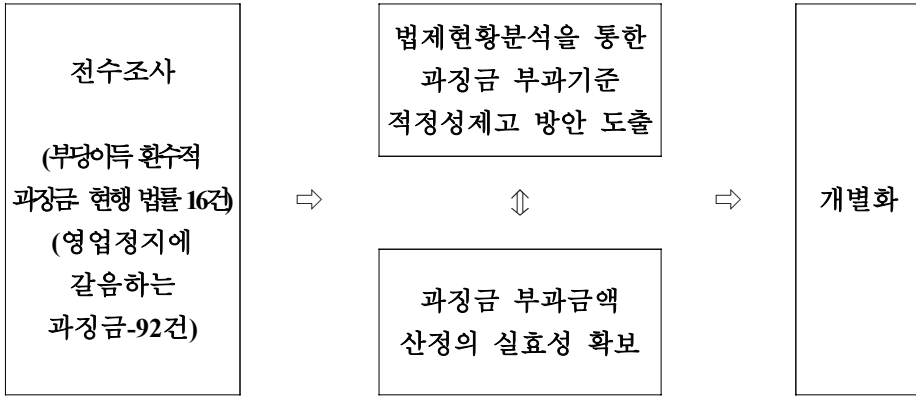
제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규범적인 관점에서는 과징금의 비형사적 성격을 중시하여 실제법적인 산정기준을 설정하고 절차적인 부과 및 심사체계를 마련함에 있어 법 집행수단으로서의 과징금 제도의 한계를 설정하고 준수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¹⁾

이러한 과징금제도는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20호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그 법리적 성격에 있어 과연 부당이득의 반환적 또는 행정제재인지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져 온 바 있다. 이는 판례(대판 2001.2.9, 2000두6206, 서울고법, 19962.13, 94구36751)에서의 견해와 같이 “부당이득환수 외에 행정제재적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고려함이 타당할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과징금액의 산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현행 16개의 부당이득 환수적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는 각 개별 법률상에 있어 문제시 되는 것은 비록 입법형식상에 있어 그 부과기준과 납부방법 및 감경 등 기준들을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고려되어 진다.

제 2 절 과징금 부과기준 적정성제고를 위한 정비기준

현행 부당이득 환수적 과징금의 법제 현황에 근거한 문제점에 대한 정비방안과 입법기준안의 도출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 홍대식, 행정법연구 제18호 (2007.8), 138면, 특히 홍교수는 ‘한계적 억제 개념’을 위법행위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단계적인 위법행위 중 더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기대처벌비용이 그보다 중대성이 약한 위법행위에 대한 그것보다 커서 더 중대한 위법행위를 억제하게 되는 문제와의 관련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



와 같은 방법론을 통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규정한 현행 법령의 분석을 통한, ① 과징금-형벌의 병과규정에 대한 비제재화, ② 과징금 부과기준의 명확화(과징금 부과시 고려사항, 가중·감경, 납부유예-분할, 과징금산정방법의 규정화)의 도출을 통한 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화 방안 제시를 하고자 한다.

1. 동일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벌금 병과 (『도시가스사업법』 등 112개 법률)

실무상 그리고 법리상 항시 논의시 되어오던 과징금과 기타 행정제재의 병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의무위반자의 입장에서 사실상 이중 제재적 효과를 발생하여 과도한 제재적 처분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2003년 7월 24일 판결을 통해서 과징금은 형벌과는 그 제정목적이 다르므로 우리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즉, 우리의 과징금제도에서는 정부의 실제손해액과 비용을 확정하기 곤란하고 총판매액의 일정한 부분을 불공정행위에 의한 이익이나 비용으로 추산하여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법분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거의 인

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형벌중 하나인 벌금보다 훨씬 과중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때로는 형벌과 함께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상 위헌의 소지가 완전히 없다고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다.²⁾

이러한 문제인식에 근거하여 그 정비방안을 도출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 바로 과징금과 함께 병과되고 있는 해당 법률상 행정벌(벌칙, 벌금)의 규정양태라 하겠다.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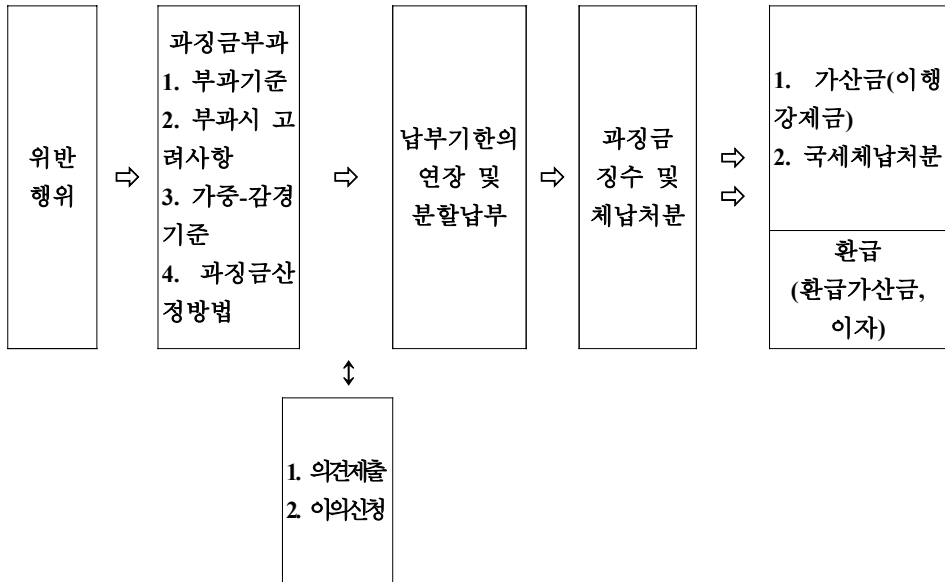
「식품위생법」 등 25개 법률은 벌칙의 형이 벌금만을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등 69개 법률(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은 벌칙의 형이 징역과 벌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18개 법률은 징역과 벌금의 병과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비방안으로써는, 벌칙의 형이 벌금만 규정된 경우에 과징금만으로도 실효성 확보가 충분하다면 원칙적으로 벌금을 폐지토록 하고, 벌칙의 형이 징역과 벌금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과징금 폐지(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또는 과징금액에서 벌금 감액을 원칙으로 하고자 한다. 예외적으로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등과 관련되는 중대한 의무위반이거나 고도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과 형벌(벌금)을 존치하여야 할 것이다. (※ 첨부 6참조)

2. 과징금 부과기준상 규정내용의 명확화

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화는 의무위반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의 산정-부과-징수-채납·환급으로 진행되는 제도의 절차상 규정의 명확화와 구체화 정도에 따라 판단되어질 것임. 때문에 국민의 권리보장적 측면에 있어 특히 과징금부과 및 의견제출·이의신청 그리고 환급에 대한 개별 법률의 입법화가 요망되어진다.

2) 정하명, 민사제재벌의 국제적 적용과 한국의 과징금제도, 공법학연구 제7권 제5호 (2006.12), 393면.



(1)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환수적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곧, 위법한 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부당이득)의 박탈과 행정경제적 요소를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됨이 타당하다.

의무위반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있어 고려시 되는 사항은, 부과액산정을 위한 부과기준, 산정방법 그리고 집행공무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재량권 행사를 위한 부과시 고려사항 및 가중·감경기준이라 할 것이다. 부당이득 환수적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16개의 개별 법률상 부과기준은 매출액 또는 다양한 용어로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부당이득)에 대하여 비율을 곱함으로써(100분의 OO) 기준을 삼고 있음이 일반적이다. 아울러 하위법령에서 별개의 조문 또는 별표상 기준을 통하여 과징금의 산정기준의 개념 및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을 통하여 부과기준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과징금부과금액의 부과시 의무위반행위의 동기, 횡수, 성

제 2 절 과징금 부과기준 적정성제고를 위한 정비기준

격 등을 고려하고 각 개별법상 특성에 상응하는 가중·감경기준을 규정하여 집행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와 부과금액 간 처분양정을 고려할 여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정을 결하고 있는 개별 법률의 경우 이의 정비를 요한다.

법 률 명	부과기준 산정	비 고
대외무역법	수출입신고금액	과징금 상한액- 3천만원 이하
보험업법	신용공여액, 채권 또는 주식 장부가액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거래금액	거래금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억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매출가액	
금융지주회사법	신용공여액, 채권 또는 주식 장부가액	10억원~ 100억이하, 100억초 과~1천억이하, 1천억초과~ 1 조원 이하, 1조원 초과로 구 분하여 과징금부과비율 적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매출액	
상호저축은행법	신용공여액, 가지금액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대금의 2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매출액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 란한 경우 5억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매출액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 란한 경우 10억원

제 3 장 과징금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법 률 명	부과기준 산정	비 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실제거래가격- 임대료 또는 요금에서 최고가격을 차감한 금액	
은행법	신용공여액, 주식 장부가액, 초과투자액 등	
청소년보호법	정기간행물의 발행-유통-수입 2천만원이하	위반횟수별 산정
환경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불법배출이익의 2배이상 10배이하	
임대주택법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액	

(2) 의견제출(이의신청)

이는 「행정절차법」 제20조 공표제도와 관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실질적 권익에 대한 사전전 권리보장에 대한 내용이다. 때문에 과징금 부과내용에 대한 의견의 제출 및 진술과 부과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과징금제도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며, 이의 입법적 불비시 규정을 새로이 두어야 할 것이다.

(3) 환 급

과징금에 대한 과오납의 경우 이를 환급하여 주어야 할 의무는 당연한 부과행정청의 의무이며, 이를 명문화 하여 과징금 부과 행정청과 과징금 납부자 간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결하고 있는 개별법률의 경우 이를 규정화 하여야 할 것이다.

3. 하위법령상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를 통한 구체화

현행 부당이득 환수적 과징금에 관한 부과기준에 관하여 하위법령에 별표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8건에 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별표를 따로이 규정하여 부과기준을 입법화하는 것은 관련 국민의 입장에서는 보다 자신의 의무위반행위와 자신이 부과 받게될 과징금액의 산정과 내용에 관하여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집행공무원의 입장에 있어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과징금 관련 분쟁에 대한 사전적 판단의 척도로서 자신의 재량권행사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행규정예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별표 2] <개정 2009.5.13>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제61조제1항관련)

1.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부과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 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
- 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 다.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 라.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 각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 부과과징금의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산정한다.

가. 기본과징금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위반행위 유형	세부 유형	관련법조문	기본과징금
1.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법 제3조의2제1항, 제6조	위반사업자의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이 영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이라 한다)에는 10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
2.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가.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 위반행위	법 제8조의2제1항·제2항, 제17조제4항	법 제17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법 제17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나. 상호출자 행위	법 제9조, 제17조제1항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취득가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행위	법 제10조의2제1항, 제17조제2항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채무보증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무보증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제 2 절 과징금 부과기준 적정성제고를 위한 정비기준

	라. 의결권행사 금지명령 위반행위	법 제17조의2 제1항·제5항	의결권행사 금지명령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취득가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3. 부당한 공동행위 등	가. 부당한 공동행위	법 제19조, 제22조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20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
	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법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5억원의 범위안에서,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연간예산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연간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
	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법 제28조제2항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
4. 불공정거래 행위 등	가. 불공정거래 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 제24조의2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
	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법 제29조, 제31조의2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

제 3 장 과징금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다.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 행위	법 제32조제1항, 제34조의2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안에서,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연간예산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연간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
5. 부당한 지원 행위	부당한 지원 행위	법 제23조제1항제7호, 제24조의2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한 지원금액의 범위안에서, 지원금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그 지원성 거래규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금액으로 본다.

비고 :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나. 의무적 조정과징금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각각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산한 금액과,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이 중 큰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다. 임의적 조정과징금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 각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재정적 상황 및 시장 여건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이 경우 가중 또는 감경하는 금액은 각각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부과과징금

(1)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금액이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

(2) 위반사업자의 부채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 또는 산업의 객관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비추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세부기준의 제정

기본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관련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의무적 조정과징금 및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을 위한 기준,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 3 절 소 결

과징금이란 행정법규 또는 행정법상 의무의 위반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자에 대하여 행정벌 만으로는 그 위반을 막을 수 없

다는 전제하에 행정법규위반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박탈함으로써 행정법규위반행위를 막는 효과를 가지는 금전적 행정제재처분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징금제도는 크게 변형된 과징금제도와 부당이득 환수적 과징금제도로 구분되어지며, 본 연구의 주된 대상은 후자의 그것이라 하겠다.

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화를 위한 정비방안으로서는, ① 실무상 그리고 법리상 항시 논의 시 되어오던 과징금과 기타 행정제재의 병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의무위반자의 입장에서 사실상 이중 제재적 효과를 발생하여 과도한 제재적 처분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는 과징금 - 형벌의 병과규정에 대한 비제재화, ② 과징금 부과기준의 명확화 (과징금 부과 시 고려사항- 부과액산정을 위한 부과기준, 산정방법 그리고 집행공무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재량권 행사를 위한 부과 시 고려사항 및 가중·감경기준, 납부유예-분할, 과징금산정방법의 규정화)의 도출 및 ③ 현행 부당이득 환수적 과징금에 관한 부과기준에 관하여 하위법령에 별표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8건에 해당하고 있고, 이와 같은 별표를 따로이 규정하여 부과기준을 입법화하는 것은 관련 국민의 입장에서 보자 자신의 의무위반행위와 자신이 부과 받게 될 과징금액의 산정과 내용에 관하여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집행공무원의 입장에 있어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과징금 관련 분쟁에 대한 사전적 판단의 척도로서 자신의 재량권행사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을 부각하여 하위법령상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를 통한 구체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 4 장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제 1 절 현행 이행강제금 규정 법제 현황 및 검토

1. 현행 이행강제금 규정 법제 현황

현행법상 이행강제금 제도가 1991년 5월에 건축법에 도입된 이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총 21개의 개별 법률에서 규정되어 지고 있다. 그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번호	법률명	산정기준	부과회수	비 고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억원의 범위 안	1년에 2회의 범위 안	산정기준은 별표 5에서 규정
2	건축법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다만,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

제 4 장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번호	법률명	산정기준	부과회수	비 고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3천만원 이하	매년 1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년에 한 번씩	
5	근로기준법	2천만원 이하	매년 2회의 범위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을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 6 5 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 절 현행 이행강제금 규정 법제 현황 및 검토

번호	법률명	산정기준	부과회수	비 고
7	금융지주회사법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	
8	노인복지법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노인복지주택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노인복지주택에 적용되는 주택가격의 공시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	
9	농지법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매년 1회 부과·징수	
1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천만원 이하	매년 2회 이내의 범위 안	
1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매년 1회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매 1일당 다음 각호의 금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다만,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2호의 기업결합을 한 자에 대하여는 매 1일당 200만원의 범위안)	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시정조치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	

제 4 장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번호	법률명	산정기준	부과회수	비 고
		1.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3호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합병의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3.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4호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영업양수금액	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	
1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과징금부과일 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처분·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매년 1회	
1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500만원 이하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안	
16	은행법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	

제 1 절 현행 이행강제금 규정 법제 현황 및 검토

번호	법률명	산정기준	부과회수	비 고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500만원	1년에 2회의 범위 안	
19	장애인·노인·임 산부등의편의증진 보장에관한법률	3천만원 이하	매년 1회	
20	전기통신사업법	매 1일당 부과할 수 있는 이행 강제금은 그 소유한 주식의 매 입가액의 1천분의 3 이내로 하 되, 주식소유와 관련되지 아니 한 사항인 경우에는 1억원 이 내의 금액	기간의 종료일부 터 90일이 경과한 후에도 시정명령 의 이행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그 종료일 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 여 이행강제금을 징수	
21	주차장법	다음 각호의 한도안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 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의 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제 1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 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 용의 20퍼센트 2. 제19조의4제2항의 규정을 위 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 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1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 비용의 10퍼센트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안	

2. 이행강제금 법제현황의 검토

(1)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

이행강제금은 과거에 그것이 개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인 점에서, 다시 말하여 인권보장이라는 견지에서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었다.³⁾ 그러나 근래에는 이행강제금(집행벌)이 이른바,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이 가지는 효용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등이 이 유가 되어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고려되어 진다.⁴⁾

이러한 이행강제금의 특징으로는,

- ① 이행강제금은 행정벌(벌금 등)과 병과될 수 있다
- ② 의무자가 반항적인 한, 이행강제금은 되풀이 부과되고, 증액될 수 있다. 즉, 행정벌에 대해서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대하여, 이행강제금은 위법상태가 존속하는 한, 반복적으로 과해질 수 있는 것이다.
- ③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은 부과, 집행되어서는 안된다.
- ④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지 않는 것이므로 활용이 용이하다
- ⑤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집행이 비교적 간단히 끝날 수 있다.

등이 설명되어지고 있다.⁵⁾

3) 일본에서는 행정벌이 그 이행강제금(집행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본 것이 당해 제도를 폐지한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고 한다.

4) 김 남진, 이행강제금과 권리구제, 고시연구, 2001, 99면

5) 김 남진, 이행강제금과 권리구제, 고시연구 2001. 1, 97면- 또한 김 교수는 집행벌이라는 용어는 직접적으로 일본에서 유해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연구가 새삼 활발해 지고 있는 일본에 있어서, 집행벌이라는 용어는 별도로 오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행정강제수단의 특성 비교]

	직접적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간접적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구분	대집행	집행벌	직접강제	강제징수	행정벌
적용 가능한 의무	대체적 작위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적 작위의무 · 비대체적 작위의무 · 부작위의무 · 수인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적 작위의무 · 비대체적 작위의무 · 부작위의무 · 수인의무 	금전급부의무	대체적 작위의무
근거	행정대집행법	건축법 등 단행법에서 한정적으로 인정	식품위생법 등 단행법에서 한정적으로 인정	개별적 단행법과 그에 의해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헌법 12조 1항 13조 1항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이행강제금은 남이 대신할 수 없는 작위의무(비대체적 작위의무)나 부작위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건축법 등에 이행강제금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그 이행강제금을 포함한 집행벌이 여전히 비대체적 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설명하는 문헌이 없지 않다.⁶⁾ 그러나, 종래의 학설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있지 않았다.

연혁적으로는 일본의 구행정집행법이나 구행정집행령 제5조 제2호가 ‘강제될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할 수 없을 때, 또는 부작위를 강제

6) 이러한 견해로는 김 동희, 행정법, 제6판, 405면- 집행벌은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과하는 금전부담; 유 지태, 행정법신론, 제4판, 285면-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이행이 없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의무를 부과할 것을 미리 계고하여 당사자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줌으로써 그 의무를 간접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수단을 말한다. 등이 대표적이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5원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 그 원인의 하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행강제금은 집행벌이 행정벌로 오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독일에서는 “대체적 작위의무”를 강제하기 위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제도로서 발전된 것이다.⁷⁾ 그러므로 이행강제금은 그 성격상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오히려 후자가 실정법상 더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⁸⁾ 또한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대체적 작위의무나 토지나 물건의 인도·이전의무의 경우는 대집행에 의한 강제보다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의한 강제가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 바, 이러한 경우에 이행강제금제도의 유효성이 있는 것이다.⁹⁾ 아울러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역시 ‘전통적으로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행되어 왔으나, 이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본질에서 오는 제약은 아니며, 이행강제금은 대체

7) 독일 연방행정집행법(VwVG) 제11조 제1항 제1문은 “작위의무가 타인에 의한 대집행이 불가능하고 오직 의무자의 의사에 달려있는 경우에는 의무자에게 이행강제금에 의하여 작위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방행정집행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강제구금(Ersatzzwangshaft)에 처할 수 있다.

8) 김중보, “이행강제금의 문제”, 『건축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자료 (2006.9.28), 79면 이하. - 공해규제를 위한 개선명령이나 시설의 이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의무가 대체적 작위의무라면 대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집행은 사업의 운영 자체를 중단시키는 강력한 수단이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가하는 것이 더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9) 행정집행법의 제정방향, 현행법제 개선방안연구(IV),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95-2, 190-191면.; 김 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제4판, 382면 이하; 이 홍구, 신행정법원론, 443면; 정 준현, 이행강제금, 법제 제346호, 22면 이하; 정 하중, 한국의 행정법상 강제집행제도의 개선방향, 김영훈교수 화갑기념논문집(1995), 392면 이하;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95-2), 행정집행법의 제정방향, 72면 이하.

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서도 부과될 수 있고 현행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양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처럼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¹⁰⁾

(2) 이행강제금과 유사제도와의 차이점

1) 벌금·과태료

벌금·과태료와는 금전적 제재수단며,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벌금·과태료는 과거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목적인데 반하여 이행강제금은 장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동종의 의무반행위에 대하여 벌금·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병과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¹¹⁾ 그리고 벌금이 의무위반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반하여 이행강제금은 의무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만으로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아울러 벌금·과태료의 경우 벌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받게 되어 동일한 의무위반사항에 대하여 반복 부과할 수 없지만 이행강제금은 벌이 아니라 행정상 의무이행의 강제수단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받지 않고, 반복 부과될 수 있음에 또한 차이점이 있다.

10) 헌법재판소 2004.2.26 선고 2002헌바26 결정(병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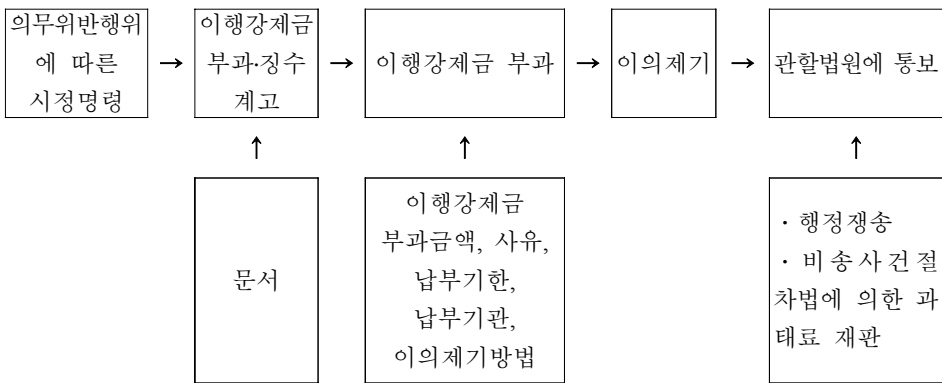
11) 헌법재판소 2006.12.8 자2006마470 결정, 대법원 2002.8.16 자 2002마1022 결정.

2) 과징금

과징금이 행정상 의무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반하여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금전적인 제재를 계속 가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다.

(3)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행정법상 의무를 명한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의무자가 납부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때 의견제출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된 바에 따르게 된다.

이행강제금의 특징은 반복부과에 있으므로, 부과주기를 법령에서 정하고 있다. 현행 법령의 경우, 9건의 법령에서 1년에 2회를 규정하고

있어 다수를 점유하고 있다.

(4)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부과금액의 산정기준은 그 기본 틀은 법령에서 명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위임하도록 하되, 하위법령에서는 가능한 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현행 법령가운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은 부과금액 산정기준에 관하여 최근(2009.8.5 신설), 시행령의 별표에서 아래와 같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별표 5] <신설 2009.8.5>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제41조의2제1항 관련)

1. 허가사항 위반

위반행위	부과액 산정식
가. 건축물의 건축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50/100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30/100
다. 공작물의 설치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50/100
라. 토지의 형질변경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바. 죽목 벌채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2. 신고사항 위반

위반행위	부과액 산정식
가. 건축물의 건축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25/100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15/100
다. 공작물의 설치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25/100
라. 토지의 형질변경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바. 죽목 벌채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3. 비 고

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결과 5천만원 이하일 때는 그 금액을 부과·징수하고,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천만원을 부과·징수한다.

나. 가목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 1)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 2)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자: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이와 같은 산정기준의 하위법령을 통한 명확화는 이행강제금의 목적이 위반행위의 시정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반행위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무위반자의 심리적 강제효과를 거두는데 적정한 금액으로 규정하여, 이행강제금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입법목적에 상응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여기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별표상 비고란에 규정되어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가중·감경기준이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시행령 제41조의2 (이행강제금의 산정·부과) 제2항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대상자 중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에 대하여는 입주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이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하거나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가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및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5호가목의 동식물 관련 시설의 소유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2년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라는 규정과 아울러 현행 이행강제금제도에 있어 새로운 입법양태라 할 것이다.

행정벌적 성격을 가지는 법리적 요소인 과태료 등의 부과기준 합리화 방안에서 활발히 진행되어지고 있는 가중·감경제도를 과연 법리

적으로 다른 집행별적 성격을 가지는 이행강제금에 적용함이 타당한지, 그리고 가중·감경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 또는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자” 등이 실무상 구체적 사유로써 기능할 수 있는 지는 의문시 된다.

제 2 절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기준

1. 이행강제금의 부과회수 상한의 구체화

이미 위에서 이행강제금의 특징은 반복부과에 있고, 부과주기를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현행 21건의 법령중 9건의 법령에서 이를 “1년에 2회”로 규정하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법령은 물론 타 법령에 있어서도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회수는 1년에 2회 이내라는 제한만 있을 뿐 부과회수의 상한에 대해 정해져 있지도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지도 않음에 문제점이 있다.

비록 건축법의 경우, 연면적 85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등 제80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부과회수의 한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현재 각 자치단체의 조례들이 위임받지도 않은 일반적 이행강제금 전반에 대해 총 부과회수를 5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아 그 법적 근거가 의문시 되는 것이다(서울시 건축조례 제43조 제3항).¹²⁾

12) 서울시건축조례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5회로 한다. (그 외에도 함안군건축조례 제34조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회수는 총5회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청군건축조례는 조례 제66조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회수 및 산정기준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회수를 최초시정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부과하되 부과회수는 5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유일하게 주차장법에서와 같이 법률에서 부과횟수의 상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 또는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한 의무위반자의 예측가능성 저하와 집행공무원의 혼란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차장법

제32조 (이행강제금) ①~③ 생략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횟수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⑦ 생략

2. 이행강제금 부과 후 위법상태 해소 조치의 규정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이행강제금) 제5항 “시장등은 제31조에 따른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와 같은 예에서와 같이 의무위반자가 위법상태를 해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여야 하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행강제금의 부과고지가 있는 후 납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위법상태를 해소한 경우, 그 해소된 기간만큼은 부과금액을 감액하여 재부과 하여야 하는지, 또는 재부과시일이 소요된다면 이미 납부한 금액에서 해당분을 환급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시 된다. 그러나 위법상태의 해소 여부 및 해소시점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부과고지를 새로하는 것도 행정능력에 비추어 무리가

있으며, 시정명령, 계고,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면서 시정 기회를 주었는데도 방관하고 있다가 부과고지를 받은 후에야 시정을 한 자에 대하여 배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나아가 납부기한이 30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행강제금의 감액 재부과 또는 환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다.

3. 이행강제금의 불복절차

2005년 개정 전의 건축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과태료처분의 불복절차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하였다(건축법 제83조 제6항[2003.5.29]).

그러나 2005년 11월 8일 개정으로 본 조항은 삭제되었으며, 이 조항의 삭제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의 일반절차에 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이행강제금의 권리구제절차를 행정소송에 의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라 규율하는 것이 이행강제금을 행정벌의 일종으로 착각한 것이라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³⁾

때문에 여전히 법률에서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불복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 준용을 규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 농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등은 이를 삭제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13) 행정집행법의 제정방향, 현행법제개선방안연구(IV),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95-2, 195면.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이행강제금) ①~④ 생략
⑤ 제25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
제20조의2 (이행강제금) ①~⑤ 생략
⑥ 제20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농지법
제62조 (이행강제금) ①~⑥ 생략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⑧ 생략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8조 (이행강제금) ①~⑥ 생략
⑦ 제27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3 절 소 결

이행강제금은 집행벌이 행정벌로 오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그 성격상 부작위의 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오히려 후자가 실정법상 더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또한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대체적 작위의무나 토지나 물건의 인도·이전의무의 경우는 대집행에 의한 강제보다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의한 강제가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 바, 이러한 경우에 이행강제금제도의 유효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적 성

격과 실효성을 가지는 현행 건축법 등 21개 개별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합리화에 관한 정비기준안은, ① 현행 21건의 법령중 9건의 법령에서 부과주기에 관하여서는 “1년에 2회”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법령은 물론 타 법령에 있어서도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부과회수의 상한에 대해 정해져 있지도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지도 않음에 대하여 법적 규정의 신설을,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고지가 있는 후 납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위법상태를 해소한 경우, 그 해소된 기간만큼은 부과금액을 감액하여 재부과 하여야 하는지, 또는 재부과시일이 소요된다면 이미 납부한 금액에서 해당분을 환급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건축법의 예에서와 같이 위법상태를 해소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되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함을 7건의 법률을 대상으로 제시하였으며, ③ 이행강제금의 불복절차에 대한 논의의 전개와 아울러 현행 농지법 등 총 4개의 법률에서 아직도 규정되고 있는 과태료부과절차의 준용규정에 대한 정비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제 5 장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현행 행정법상 금전적 제재수단으로서 대표되는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의 적정성제고(합리화)를 위한 정비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행질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의 과태료와 기타 다른 성격의 제재수단을 병과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지로써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효과를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고려되어진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국민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과잉 제재적 효과를 발생하고 이는 곧 국민과 행정청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연구에서는 법규정상 병과되는 경우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①과태료-영업정지, ②과태료-벌칙, ③과태료-과징금, ④과징금-벌칙) 이에 대한 분석과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휴·폐업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삭제 원칙은 현행 이를 규정한 각 개별 법률의 입법목적과 신고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으로 타당하지 않을 수 있기에 각 개별법상 휴·폐업신고의 대상이 되는 업무가 공익성을 가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삭제함이 타당함. 또한 이러한 삭제의 경우 대비안의 제시 또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기관에 대한 유사명칭사용금지 규정의 입법취지는 현대생활에 있어 인터넷의 괄목할 만한 성장 및 이용자의 법인식의 변화 그리고 법인설립에 있어 주무관청 등의 주의의무 강화 등으로 인하여 그 입법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경향에 있음. 때문에 특수법인에 해당되는 기관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은 폐지하고, 다만 해당 기관의 특별한 의무유지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존치하도록 함.” 이라는 특수법인에 대한 유사의무사용 금지의 원칙적 폐지를 논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수법인이 가지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고려

시 다소 무리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유사명칭금지 의무에 있어 현행과 같이 나타나는 부과금액간의 현격한 차이는 비제재화 방안에 대한 정비방안이라기 보다는 부과기준이 과도한 경우 또는 부과기준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로 설정함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인식되어 진다.

차수규정의 확대 적용에 관하여 연구자는 초안을 통하여 과태료부과기준의 합리화를 위한 입법적 정비안의 큰 축은 비제재화와 제제의 적정성 도출방안으로 축약되어지며, 이는 위반사항의 성격을 중심으로 그 구체화내지 세분화를 통한 적정성 도출에 의미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경미한 또는 과도한”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세분화가 용이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어지고, 더욱이 법리적 측면에 있어 일반적 행정제재처분(영업정지 등)과는 달리 금전적 제재라는 특성에 기인하여 제1차 처분시 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의 처분규정을 선행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을 문제의식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근거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집행행정청 및 법원에 감경에 대한 요건을 명문화 하였다고는 하나 실무에 있어 집행공무원 등의 입법취지에 상응하는 재량권행사 여부는 의문시됨을 차수규정 확대 적용을 위한 근거의 하나로서 언급한 바 있다. 이미 다수의 개별법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차수규정의 확대적용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① 적용대상을 확정하고, ② 차수규정에 있어 입법적 형식의 주요 요소인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단계적 차수 및 부과기준에서 차수산정을 위한 일정기간을 설정하고, ③ 단계적 차수에 대한 부과금액의 비율에 대한 기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과징금이란 행정법규 또는 행정법상 의무의 위반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자에 대하여 행정벌 만으로는 그 위반을 막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행정법규위반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박탈함으로써 행정법규위반행위를 막는 효과를 가지는 금전적 행정제재처분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징금제도는 크게 변형된 과징금제도와 부당이득 환수적 과징금제도로 구분되어지며, 본 연구의 주된 대상은 후자의 그것이라 하겠다.

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화를 위한 정비방안으로서는, ① 실무상 그리고 법리상 항시 논의 시 되어오던 과징금과 기타 행정제재의 병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의무위반자의 입장에서 사실상 이중 제재적 효과를 발생하여 과도한 제재적 처분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는 과징금 - 형벌의 병과규정에 대한 비제재화, ② 과징금 부과기준의 명확화 (과징금 부과 시 고려사항- 부과액산정을 위한 부과기준, 산정방법 그리고 집행공무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재량권 행사를 위한 부과 시 고려사항 및 가중·감경기준, 납부유예-분할, 과징금산정방법의 규정화)의 도출 및 ③ 현행 부당이득 환수적 과징금에 관한 부과기준에 관하여 하위법령에 별표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8건에 해당하고 있고, 이와 같은 별표를 따로이 규정하여 부과기준을 입법화하는 것은 관련 국민의 입장에서는 보다 자신의 의무위반행위와 자신이 부과 받게 될 과징금액의 산정과 내용에 관하여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집행공무원의 입장에 있어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과징금 관련 분쟁에 대한 사전적 판단의 척도로서 자신의 재량권행사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을 부각하여 하위법령상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를 통한 구체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행강제금은 집행벌이 행정벌로 오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그 성격상 부작위의 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오히려 후자가 실정법상 더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또한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대체적 작위의무나 토지나 물건의 인도·이전의무의 경우는 대집행에 의한 강제보다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의한 강제가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 바, 이러한

경우에 이행강제금제도의 유효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적 성격과 실효성을 가지는 현행 건축법 등 21개 개별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합리화에 관한 정비기준안은, ① 현행 21건의 법령중 9건의 법령에서 부과주기에 관하여서는 “1년에 2회”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법령은 물론 타 법령에 있어서도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부과회수의 상한에 대해 정해져 있지도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지도 않음에 대하여 법적 규정의 신설을,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고지가 있는 후 납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위법상태를 해소한 경우, 그 해소된 기간만큼은 부과금액을 감액하여 재부과 하여야 하는지, 또는 재부과시일이 소요된다면 이미 납부한 금액에서 해당분을 환급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건축법의 예에서와 같이 위법상태를 해소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되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함을 7건의 법률을 대상으로 제시하였으며, ③ 이행강제금의 불복절차에 대한 논의의 전개와 아울러 현행 농지법 등 총 4개의 법률에서 아직도 규정되고 있는 과태료부과절차의 준용규정에 대한 정비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이와 같은 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기준의 정비안 제시는 일반화된 금전적 제재수단으로서의 각 제도가 가지는 특성과 아울러 의무위반자의 의무위반행위와 처분기준(금액) 간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적정성을 도모함을 곧 부과기준의 합리화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는 향후 금전적 제재처분에 있어 집행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보다 투명한 재량권 행사를 위한 척도로서, 그리고 의무위반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자신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실질적 권익의 향상과 법질서 확립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구철, “과징금제도에 관한 약간의 고찰”, 고시연구 1997년 10월호
-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I』, 법문사, 2006
- 김남철, “독일 경찰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현황과 시사점” 『경찰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자료집 2006. 5. 26
-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06
- 김성수, 『일반행정법』, 법문사, 2004
- 김재광·최철호·강문수,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I)』, 한국법제연구원, 2006. 10
- 김중보, 『건축행정법』, 학우, 2005
- 김혜룡, “현행 건축허가절차의 문제점”, 『토지공법연구』, 1996
-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6
- 박균성,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6
- _____,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6
- 박영도, 『입법기술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1997
- 박영도·김호정, 『과징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2
- 박영도·박수현, 『과징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 1993

[참고문헌]

- 박윤훈,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4
- 박혜식,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법적 성격”, 『경쟁법연구』 제8권, 2002
-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2005
- 신봉기, “경제규제법상 과징금제도”, 『법조』, 1992. 9
- 장교식, “일본의 경제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연구(Ⅱ) 11차 워크샵』, 한국법제연구원, 2007. 6.22
- 정하중, 『행정법총론』(제3판), 법문사.
- _____, “한국의 행정법상 강제집행제도의 개선방향”, 『김영훈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5
- 조정찬,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문제-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의 법적 성질을 중심으로-”, 『법제』, 1998. 8
- 윤영선, “행정소송과 재량준칙” 『공법연구』 제28집 제1호, 1999
- 이상철, “과징금법제연구”, 법제처 법제연구총서(법제개선자료 제4집), 1997
- 임병수·고낙훈, “2006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연구(Ⅱ) 1차 워크샵』, 한국법제연구원, 2007. 3. 30
- 조태제, “독일에서의 행정입법절차에 관한 논의” 『현대행정법학이론(우제이명구박사화갑기념논문집 Ⅱ)』, 1996
- 채우석, “과징금 제도에 관한 일고찰”, 『토지공법연구』, 2002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6

홍준형 · 김성수 · 김유환, 『행정절차법제정연구』, 1996

(외국문헌)

Beckermann, Martin, Die gerichtliche Überprüfung von Verwaltungsvorschriften im Wege der verwaltungsgerichtlichen Normenkontrolle, DVBl. 1987, 611-618.

Bachof, Otto, Beurteilungsspielraum, Ermessen und unbestimmter Rechtsbegriff im Verwaltungsrecht, JZ 1995, 97-102

Battis, Ulrich/Gusy, Christoph, Technische Normen im Baurecht, Düsseldorf, 1988.

Battis, Ulrich/Krautzberger, Michael/Löhr, Rolf-Peter, Baugesetzbuch, München, 1999.

Brohm, winfried, Öffentliches Baurecht, 1997, München, S. 433 ff.

Die Bundesregierung, Moderner Staat- Moderner Verwaltung. Das Programm er Bundesregierung(<http://www.staat-modern.de/infos/daten/leitbild.pdf>)

Erichsen, Hans-Uwe/Klüsche, Charlotte, Verwaltungsvorschriften, Jura 2000, 540-548

Ferner, Hilmar/Kröniger, Holger, Baugesetzbuch, Nomos, 2005.

Hans D. Jarass, Bindungswirkung von Verwaltungsvorschriften, JuS 1999, S. 108.

Hill, Hermann, Einführung in die Gesetzgebungslehre, Heidelberg, 1982.

Hoppenberg, Michael (Hrsg.), Handbuch des öffentlichen Baurechts, München, 1997

[참 고 문 헌]

- Jachmann, Monika, Die Bindungswirkung normkonkretisierender Verwaltungsvorschriften, Die Verwaltung 28 (1995), 17-31
- Ossenbühl, Fritz, Der verfassungsrechtliche Rahmen offener Gesetzgebung und konkretisierender Rechtsetzung, DVBl. 1999, 1-7
- Stich, Rudolf, Handlungs- und Entscheidungsspielräume des Landes bei der Bundesauftragsverwaltung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Ausführung des Atomgesetzes, in: AöR 110 (1985), 419-446
- Tettinger, Peter J, Überlegungen zu einem administrativen Prognosespielraum, DVBl. 1982, 421-433
- Wolf, Joachim, Die Kompetenz der Verwaltung zur Normsetzung durch Verwaltungsvorschriften, DÖV 1992, 849-860
- Jarass/Pieroth, Grundgesetz, Kommentar, 5. Aufl., München 2000
- Thomas Oppermann, Europarecht, 3. Aufl, 2005, § 13 Rdn. 3.
- Thomas Sauerland, Die Verwaltungsvorschrift im System der Rechtsquellen, Berlin 2005
- R. Stober, Allgemeines Wirtschaftsverwaltungsrecht, 15. Aufl., Stuttgart 2006
- Besonderes Verwaltungsrecht, Band II, 2. Aufl., Heidelberg 2000
- Dietrich/Kahle, Leben mit Laerm?, DVBl. 2005
- H.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6. Aufl., München 2006
- Kropp, Die behördliche Lenkung von Abfallstroemen im Binnenmarkt, Berlin 2003
- Weidemann/Neun, Zum Ende der Abfalleigenschaft von Bauteilen aus Altgeraeten dund Altrahrzeugen, NuR 2004

Carter, Lief H. (1983), “Administrative Law and Politics: Cases and Comments”, Little, Brown and Company.

Cooper, Frank E. (1965), “State Administrative Law”, American Bar Foundation, The Bobbs-Merrill Company.

Legislative Council, State of Michigan (2007), <http://www.legislature.mi.gov>

Reigel, Stanley A. and P. John Owen (1982), “Administrative Law: The Law of Government Agencies”, Ann Arbor Science Publishers.

宮田三郎, 『行政裁量とその統制密度』, 1994

塩野宏, “審査基準について” 『憲法裁判と行政訴訟』, 1999

阿部泰隆, 行政の法システム(下), 有斐閣, 2002

小早川光郎, 行政手続法逐条研究, ジュリスト増刊, 1996

小早川光郎, 行政法講義 9(下), 弘文堂, 2002

塩野宏, 行政法 I (第Ⅲ版), 有斐閣, 2003

宇賀克也, 行政手続法の理論, 東京大學出版會, 1995

原田尚彦, 行政法要論, 學陽書房, 2004

田中二郎, 新版行政法 (上卷), 有斐閣, 1987

田村悦一, 行政訴訟における国民の権利保護, 有斐閣, 1975

첨 부

[첨부 1] 현행 과태료규정 법률 및 금액

번호	법률명	상한금액	소관부처
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안경기대회지원법	300만원 이하	문화체육관광부
2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3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00만원 이하	국가보훈처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억원 이하	공정거래위원회
5	가사소송법	100만원이하	법무부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00만원 이하	여성부
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50만원 이하	법무부
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50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천만원 이하	환경부
10	가축전염병예방법	500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1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2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5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13	개항질서법	2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30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1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500만원 이하	노동부
16	건설기계관리법	1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17	건설기술관리법	1천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18	건설산업기본법	5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1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천만원 이하	환경부

첨 부

번호	법 률 명	상한금액	소관부처
2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1억원 이하	국토해양부
21	건축법	3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22	건축사법	1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23	검역법	10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천만원 이하	문화체육관광부
25	결핵예방법	10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2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30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27	경륜·경정법	100만원 이하	문화체육관광부
28	경비업법	500만원 이하	경찰청
29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500만원 이하	교육과학기술부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천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31	계량에 관한 법률	300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32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300만원 이하	문화재청
3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500만원 이하	노동부
34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50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35	고속국도법	3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3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2천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3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300만원 이하	국가보훈처
3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300만원 이하	노동부
39	고용보험법	300만원 이하	노동부
40	고용정책기본법	300만원 이하	노동부
4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00만원 이하	행정안전부

번호	법 률 명	상한금액	소관부처
42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만원 이하	기획재정부
4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5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44	공무원연금법	100만원 이하	행정안전부
45	공사채등록법	200만원 이하	금융위원회
46	공연법	1천만원 이하	문화체육관광부
47	공유수면관리법	5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48	공유수면매립법	5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4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50	공인노무사법	100만원 이하	노동부
5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천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52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2천만원 이하	금융위원회
53	공중위생관리법	30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5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100만원 이하	행정안전부
55	공증인법		법무부
56	공직선거법	1천만원 이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7	공직자윤리법	2천만원 이하	행정안전부
58	관광진흥법	100만원 이하	문화체육관광부
59	관세법	200만원 이하	기획재정부
60	관세사법	100만원 이하	기획재정부
61	광산보안법	200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6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1천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63	광업법	500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64	광주과학기술원법	100만원 이하	교육과학기술부

첨 부

번호	법 률 명	상한금액	소관부처
65	교육공무원법	100만원 이하	교육과학기술부
66	교통안전공단법	1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67	교통안전법	1천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68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2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6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00만원 이하	국가보훈처
70	국가인권위원회법	1천만원 이하	국가인권위원회
71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500만원 이하	교육과학기술부
72	국민건강보험법	50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73	국민건강증진법	30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74	국민연금법	1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7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00만원 이하	법무부
76	국민체육진흥법	500만원 이하	문화관광체육부
77	국방과학연구소법	300만원 이하	국방부
78	국제선박등록법	3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7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80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3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천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82	군사법원법	50만원 이하	국방부
8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 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00만원 이하	통일부
84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1천만원 이하	국방부
85	근로기준법	500만원 이하	노동부
86	근로자복지기본법	300만원 이하	노동부
8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300만원 이하	노동부

번호	법 률 명	상한금액	소관부처
8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00만원 이하	노동부
8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천만원 이하	노동부
9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천만원 이하	환경부
9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천만원 이하	금융위원회
9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500만원 이하	금융위원회
93	금융지주회사법	5천만원 이하	금융위원회
9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00만원 이하	소방방재청
9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억원 이하	노동부
96	기능대학법	300만원 이하	노동부
97	기르는 어업육성법	500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9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500만원 이하	행정안전부
99	기상관측표준화법	1천만원 이하	기상청
100	기상법	100만원 이하	기상청
101	기술개발촉진법	100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102	기술사법	300만원 이하	교육과학기술부
103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1천만원 이하	국토해양부,외교통상부,환경부
1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천만원 이하	노동부
10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300만원 이하	통일부
106	내수면어업법	100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107	노동위원회법	100만원 이하	노동부
10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00만원 이하	노동부
109	노인복지법	50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110	노인장기요양보호법	50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첨 부

번호	법 률 명	상한금액	소관부처
111	농산물품질관리법	1천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112	농수산물유통공사법	50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11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500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114	농약관리법	500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115	농어업재해대책법	500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116	농어촌도로정비법	50만원 이하	행정안전부
117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50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118	농어촌정비법	100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119	농업기계화촉진법	1천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120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00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121	농업협동조합법	200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12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천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123	농작물재해보험법	1천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124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2천만원 이하	문화체육관광부
125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천만원 이하	환경부
12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0만원 이하	소방방재청
127	담배사업법	200만원 이하	기획재정부
128	담보부사채신탁법	500만원 이하	금융위원회
12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500만원 이하	중소기업청
130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100만원 이하	교육과학기술부
131	대기환경보전법	200만원 이하	환경부
13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2천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번호	법 률 명	상한금액	소관부처
133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2천만원 이하	금융위원회
134	대외무역법	2천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13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5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136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300만원 이하	국가보훈처
137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200만원 이하	기획재정부
138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100만원 이하	국회사무처
139	대한석탄공사법	50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140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5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141	대한주택공사법	1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142	도로교통법	500만원 이하	경찰청
143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50만원 이하	행정안전부
144	도로법	3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145	도서관법	해당자료정가의 10배	문화체육관광부
146	도선법	3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147	도시가스사업법	3천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148	도시개발법	1천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14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15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천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1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천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15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500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153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300만원 이하	환경부
15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00만원 이하	국가보훈처

첨 부

번호	법 률 명	상한금액	소관부처
15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억원 이하	공정거래위원회
156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1천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157	동물보호법	50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158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00만원 이하	교육과학기술부
159	디자인보호법	50만원 이하	특허청
160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50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161	먹는물관리법	300만원 이하	환경부
162	모자보건법	20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16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164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 신탁법	2천만원 이하	환경부
165	문화재보호법	500만원 이하	문화재청
166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1천만원 이하	기획재정부
16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168	물류정책기본법	2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169	민방위기본법	30만원 이하	행정안전부
170	민법	500만원 이하	법무부
171	민사소송법	500만원 이하	법무부
172	민사조정법	30만원 이하	법무부
173	민사집행법	500만원 이하	법원행정처
174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1천만원 이하	법무부
175	발명진흥법	1천만원 이하	특허청
17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500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17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천만원 이하	공정거래위원회
178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200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번호	법 률 명	상한금액	소관부처
179	방송법	3천만원 이하	방송통신위원회
180	범죄피해자보호법	300만원 이하	법무부
181	법률구조법	100만원 이하	법무부
182	법원조직법	100만원 이하	법무부
18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500만원 이하	중소기업청
184	변호사법	1천만원 이하	법무부
185	별정우체국법	100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186	병역법	300만원 이하	국방부
187	보건환경연구원법	10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188	보험업법	1천만원 이하	금융위원회
189	복권 및 복권기금법	1천만원 이하	기획재정부
19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191	부동산등기법	5만원 이하	법무부
19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3천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19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지방세법의 규정 에 의한 부동산가액의 5배 이하	법무부
194	부동산투자회사법	5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19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천만원 이하	특허청
19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천만원 이하	국민권익위원회
197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500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198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500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첨 부

번호	법 률 명	상한금액	소관부처
199	비료관리법	500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200	비송사건절차법		법원행정처
201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0만원 이하	교육과학기술부
202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100만원 이하	경찰청
203	사내근로복지기금법	50만원 이하	노동부
204	사료관리법	500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20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100만원 이하	교육과학기술부
206	사립학교법	500만원 이하	교육과학기술부
20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천만원 이하	기획재정부
20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50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209	사회복지사업법	30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210	사회적기업 육성법	1천만원 이하	노동부
211	삭도·궤도법	1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21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20만원 이하	산림청
2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00만원 이하	산림청
214	산림조합법	200만원 이하	산림청
215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천만원 이하	산림청
216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50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21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천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218	산업발전법	2천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219	산업안전보건법	1천만원 이하	노동부
2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만원 이하	노동부
2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500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번호	법 률 명	상한금액	소관부처
222	산업표준화법	300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223	산지관리법	1천만원 이하	산림청
224	상공회의소법	100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225	상법	500만원 이하	법무부
226	상표법	50만원 이하	특허청
227	상호저축은행법	500만원 이하	금융위원회
22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50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229	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	3천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230	석탄산업법	100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231	선박법	2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232	선박안전법	2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233	선박직원법	3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234	선박투자회사법	5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235	선원법	5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236	선주상호보험조합법	5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23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00만원 이하	여성부
23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00만원 이하	여성부
239	세무사법	1천만원 이하	기획재정부
240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1천만원 이하	중소기업청
24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200만원 이하	산림청
242	소년법	100만원 이하	법무부
243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500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244	소방기본법	200만원 이하	소방방재청

첨 부

번호	법 률 명	상한금액	소관부처
245	소방시설공사업법	200만원 이하	소방방재청
246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0만원 이하	소방방재청
247	소비자기본법	3천만원 이하	공정거래위원회
24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100만원 이하	공정거래위원회
249	소음·진동규제법	100만원 이하	환경부
250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 관한특별법	300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251	송유관안전관리법	300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252	수난구호법	100만원 이하	해양경찰청
25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500만원 이하	환경부
25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00만원 이하	환경부
255	수도법	1천만원 이하	환경부
256	수로업무법	3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257	수산동물질병관리법	300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258	수산물품질관리법	1천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259	수산업법	500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260	수산업협동조합법	200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261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 관한법률	2천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262	수상레저안전법	100만원 이하	해양경찰청
263	수의사법	500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26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천만원 이하	환경부
265	수출보험법	100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266	수표법	50만원 이하	법무부
267	습지보전법	200만원 이하	환경부

번호	법률명	상한금액	소관부처
268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00만원 이하	행정안전부
26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억원 이하	국토해양부
270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5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271	식물방역법	500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272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30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273	식품산업진흥법	500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274	식품위생법	1천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275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2천만원 이하	문화체육관광부
276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3천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27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1천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27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천만원 이하	금융위원회
279	신용협동조합법	1천만원 이하	금융위원회
280	신항만건설촉진법	3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281	실용신안법	50만원 이하	특허청
28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0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28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천만원 이하	문화체육관광부
284	악취방지법	200만원 이하	환경부
28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300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286	야생동·식물보호법	1천만원 이하	환경부
28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천만원 이하	공정거래위원회
288	약사법	10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289	양곡관리법	200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290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1천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첨 부

번호	법 률 명	상한금액	소관부처
29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500만원 이하	행정안전부
292	어선법	100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293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100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294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200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295	어장관리법	200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296	어촌·어항법	200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297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3천만원 이하	문화체육관광부
29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천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299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100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3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천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30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100만원 이하	중소기업청
302	여신전문금융업법	500만원 이하	금융위원회
30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천만원 이하	교육과학기술부
304	연안관리법	3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305	염업조합법	200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306	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		기획재정부
30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천만원 이하	환경부
308	영유아보육법	50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30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천만원 이하	문화체육관광부
310	예금자보호법	200만원 이하	금융위원회
311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100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31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500만원 이하	행정안전부
313	온천법	200만원 이하	행정안전부

번호	법 률 명	상한금액	소관부처
31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00만원 이하	노동부
315	외국인토지법	3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316	외국인투자촉진법	1천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317	외국환거래법	5천만원 이하	기획재정부
318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1천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319	우주개발진흥법	1천만원 이하	교육과학기술부
320	우편법	50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321	원양산업발전법	500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322	원자력법	300만원 이하	교육과학기술부
323	원자력손해배상법	50만원 이하	교육과학기술부
324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교육과학기술부
325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1천만원 이하	교육과학기술부
326	위생사에 관한 법률	10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32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천만원 이하	방송통신위원회
328	위험물안전관리법	2백만원 이하	소방방재청
329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5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330	유전자변형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1천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331	유통산업발전법	500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33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00만원 이하	환경부
33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천만원 이하	문화체육관광부
334	은행법	5천만원 이하	금융위원회
33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0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336	의료기기법	10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337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10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첨 부

번호	법 률 명	상한금액	소관부처
338	의료법	30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339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법률	1천만원 이하	국방부
340	인삼산업법	500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341	인쇄문화산업진흥법	300만원 이하	문화체육관광법
34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5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343	인체조직의 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50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344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1천만원 이하	방송통신위원회
345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 에 관한 특별법	1천만원 이하	행정안전부
346	임금채권보장법	500만원 이하	노동부
347	자동차관리법	1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34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천만원 이하	금융위원회
34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500만원 이하	금융위원회
35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00만원 이하	환경부
351	자연공원법	200만원 이하	환경부
352	자연재해대책법	300만원 이하	소방방재청
353	자연환경보전법	200만원 이하	환경부
35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00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35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1천만원 이하	기획재정부
356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1천만원 이하	환경부
357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천만원 이하	문화체육관광부
35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30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359	장사등에 관한 법률	30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360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00만원 이하	노동부

번호	법 률 명	상한금액	소관부처
36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0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362	장애인복지법	30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363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천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364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1.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기간 (이하 이 항에서 “해태기간”이라 한다)이 기간 만료일부터 1월 이상 2월 미만인 때 :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2. 해태기간이 2월 이상 6월 미만인 때 :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3. 해태기간이 6월 이상 12월 미만인 때 :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4. 해태기간이 12월 이상인 때 :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국토해양부
36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0만원 이하	행정안전부
366	채resh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500만원 이하	중소기업청
367	채외동포재단법	200만원 이하	외교통상부

첨 부

번호	법 률 명	상한금액	소관부처
36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200만원 이하	법무부
369	재해구호법	500만원 이하	소방방재청
370	저작권법	3천만원 이하	문화체육관광부
37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3천만원 이하	환경부
372	전기공사업법	300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373	전기공사공제조합법	500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374	전기사업법	300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375	전기용품안전관리법	500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376	전기통신기본법	1천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377	전기통신사업법	1천만원 이하	방송통신위원회
378	전력기술관리법	200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379	전시산업발전법	1천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380	전염병예방법	10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381	전자거래기본법	3천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382	전자금융거래법	1천만원 이하	금융위원회
383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1천만원 이하	법무부
384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천만원 이하	공정거래위원회
385	전자서명법	500만원 이하	행정안전부
386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300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387	전파법	1천만원 이하	방송통신위원회
388	접경지역지원법	200만원 이하	행정안전부
389	정당법	100만원 이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번호	법률명	상한금액	소관부처
390	정당사무관리규칙	30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91	정보통신공사업법	300만원 이하	방송통신위원회
392	정보통신기반보호법	1천만원 이하	행정안전부
39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천만원 이하	방송통신위원회
394	정보화촉진 기본법	500만원 이하	행정안전부
395	정부법무공단법	300만원 이하	법무부
396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300만원 이하	국무총리실
397	정신보건법	10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398	정치자금법	300만원 이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9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500만원 이하	국가보훈처
400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천만원 이하	행정안전부
401	종자산업법	500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402	주민등록법	50만원 이하	행정안전부
40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300만원 이하	행정안전부
40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천만원 이하	금융위원회
405	주차장법	5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406	주택법	1천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40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 특별법	200만원 이하	행정안전부
40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200만원 이하	국방부
409	중소기업창업지원법	500만원 이하	중소기업청
41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50만원 이하	중소기업청
411	중소기업은행법	1천만원	금융위원회

첨 부

번호	법 률 명	상한금액	소관부처
41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300만원 이하	중소기업청
413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1천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414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3천만원 이하	법무부
415	지방공기업법	200만원 이하	행정안전부
416	지방문화원 진흥법	500만원 이하	문화체육관광부
41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0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418	지능형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	300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419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1억원 이하	방송통신위원회
420	지역보건법	30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42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500만원 이하	중소기업청
422	지적법	2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423	지하수법	5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424	직업안정법	100만원 이하	노동부
42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1천만원 이하	행정안전부
42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천500만원 이하	노동부
42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00만원 이하	법무부
428	집단에너지사업법	200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4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만원 이하	법무부
430	집행관법	200만원 이하	법무부
431	철도사업법	5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43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1천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433	철도안전법	1천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434	청년실업해소특별법	500만원 이하	노동부

[첨부 1] 현행 과태료규정 법률 및 금액

번호	법 률 명	상한금액	소관부처
435	청소년기본법	50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436	청소년보호법	50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437	청소년복지지원법	5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438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천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439	청원경찰법	500만원 이하	경찰청
44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00만원 이하	문화체육관광부
441	초·중등교육법	100만원 이하	교육과학기술부
44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300만원 이하	경찰청
443	최저임금법	100만원 이하	노동부
444	축산물가공처리법	300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445	축산법	500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446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천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447	출입국관리법	200만원 이하	법무부
44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300만원 이하	문화체육관광부
449	측량법	2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450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1천만원 이하	법무부
45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300만원 이하	환경부
45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1천만원 이하	문화체육관광부
453	토양환경보전법	200만원 이하	환경부
454	통계법	300만원 이하	통계청
45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00만원 이하	국방부
45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천만원 이하	금융위원회

첨 부

번호	법 률 명	상한금액	소관부처
457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억원 이하	노동부
458	평생교육법	500만원 이하	교육과학기술부
459	폐기물관리법	1천만원 이하	환경부
46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100만원 이하	환경부
46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억원 이하	공정거래위원회
46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1천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463	풍수해보험법	1천만원 이하	소방방재청
46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천만원 이하	공정거래위원회
465	하수도법	1천만원 이하	환경부
466	하천법	3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467	학교급식법	500만원 이하	교육과학기술부
46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50만원 이하	교육과학기술부
469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500만원 이하	교육과학기술부
47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0만원 이하	교육과학기술부
47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00만원 이하	환경부
472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200만원 이하	농촌진흥청
473	한국가스공사법	200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474	한국고전번역원법	200만원 이하	교육과학기술부
475	한국공항공사법	5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476	한국과학기술원법	100만원 이하	교육과학기술부
477	한국광물자원공사법	50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478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500만원 이하	교육과학기술부
479	한국국방연구원법	300만원 이하	국방부

번호	법 률 명	상한금액	소관부처
480	한국국제교류재단법	200만원 이하	외교통상부
48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50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482	한국국제협력단법	200만원 이하	외교통상부
48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00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48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100만원 이하	교육과학기술부
485	한국도로공사법	1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486	한국마사회법	100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487	한국법학원 육성법	500만원 이하	법무부
488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50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48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500만원 이하	국가보훈처
49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100만원 이하	교육과학기술부
49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500만원 이하	노동부
492	한국산업은행법	500만원 이하	금융위원회
493	한국산업인력공단법	500만원 이하	노동부
494	한국석유공사법	200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495	한국수자원공사법	1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496	한국수출입은행법	1000만원 이하	기획재정부
49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100만원 이하	교육과학기술부
498	한국전력공사법	200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499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100만원 이하	교육과학기술부
50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500만원 이하	금융위원회
501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100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502	한국철도공사법	1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503	한국철도시설공단법	1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첨 부

번호	법 률 명	상한금액	소관부처
50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1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505	한국토지공사법	1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506	한국투자공사법	500만원 이하	기획재정부
507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법률	1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508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1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509	한국해운조합법	5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51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500만원 이하	공정거래위원회
511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10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512	항공법	5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513	항로표지법	1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514	항만공사법	1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515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516	항만법	2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517	해상교통안전법	3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518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2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51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52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521	해양환경관리법	1천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522	해외건설촉진법	3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52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300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524	해운법	1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525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100만원 이하	교육과학기술부
526	혈액관리법	20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52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첨부 1] 현행 과태료규정 법률 및 금액

번호	법 률 명	상한금액	소관부처
528	화장품법	10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529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300만원 이하	금융위원회
530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1천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531	환경교육진흥법	20만원 이하	환경부
53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0만원 이하	환경부
53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100만원 이하	환경부
534	환경분쟁조정법	100만원 이하	환경부
535	환경영향평가법	2천만원 이하	환경부
53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1천만원 이하	지식경제부
537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00만원 이하	보건복지가족부
538	휴먼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500만원 이하	금융위원회

[첨부 2] 현행 하위법령상(별표) 과태료규정 주요내용 현황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1	화장품법 [별표 2] 과태료 금액(제13조관련)	○		—	—		
2	인쇄문화산업 진 흥법 [별표] 과태료 부 과 금액(제18조제 3항 관련)	○		—	—		
3	의료법 [별표 7] 과태료 부과 기준(제80조 관련)		○	—	—		
4	출판문화산업 진 흥법 [별표 2] 과태료 부과금액[제18조 제3항관련]	○		—	—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	—	—		
6	하천법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107조 제3항 관련)	○		—	—		

첨 부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7	동물보호법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1조제3항 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반 기준에서 가중 감경기준 제시	
8	진과법 [별표 28] 과태료 부과기준(제124조 관련)	○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반 기준에서 가중·감경 기준 제시	
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16조 관련)	○		3차	1년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반 기준에서 감경기준 제시	
10	병역법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제171조 관련)	○		3차	1년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반 기준에서 가중·감경 기준 제시	
1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		—	—		
12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	○		3차	3년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란에서 가중·감경 기준	

[첨부 2] 현행 하위법령상(별표) 과태료규정 주요내용 현황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관련)					제시	
1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제3항 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란에서 가중·감경 기준 제시	
14	영유아보육법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제1항 관련)	○		3차	3년		
1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제4항 관련)	○		—	—		
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 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란에서 가중·감경 기준 제시	
1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제2항 관련)	○		—	—		
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제31조	○		2차	2년		

첨 부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관련)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 란에서 가중 · 감경 기준 제시	
20	산림조합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별표] 과태료 부 과기준(제36조제3 항 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반 기준에서 가 중·감경 기 준 제시	
2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 고에 관한 법률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38조제 1항 관련)	○		—	—		
22	장애인복지법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 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반 기준에서 가 중·감경 기 준 제시	
23	자연공원법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 관련)	○		3차	1년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반 기준에서 감 경기준 제시	
24	옥외광고물 등 관 리법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 제4항 관련)	○					

[첨부 2] 현행 하위법령상(별표) 과태료규정 주요내용 현황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25	민방위기본법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제57조 제3항 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 란에서 가중 · 감경 기준 제시	
26	정보통신공사업법 [별표 10] 과태료 부과기준(제58조 제1항 관련)	○		—	—		
27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에 관한 법률 [별표] 과태료 부 과기준(제7조 관련)	○		4차	3년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반 기준에서 가 중·감경 기 준 제시	
28	실종아동등의 보 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별표] 과태료 부 과기준(제9조 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반 기준에서 가 중·감경 기 준 제시	
29	성폭력범죄의 처 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제14조 관련]		○	—	—		
30	부동산등기특별 조치법에 의한과 태료부과·징수 규칙 [별표] 과태료 부 과기준[제3조제1		○	—	—		

첨 부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항관련]						
31	도선법 [별표 4] 과태료 처분기준(제20조 제3항 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 란에서 가중 · 감경 기준 제시	
32	의료기기법 [별표 9] 과태료 금액산정기준[제 40조제3항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 란에서 감경 기준 제시	
33	기르는 어업육성법 [별표 5] 과태료금 액의산정기준[제24 조제3항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 란에서 감경 기준 제시	
34	기술사법 [별표 3] 과태료 를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부 과금액[제27조제3 항관련]	○		—	—		
35	출입국관리법 [별표 2] 과태료부 과 기준표(제102 조제1항 관련)	○		—	—		
36	식품기부 활성화 에 관한 법률 [별표 3] 과태료 부과금액[제8조제 3항관련]	○		—	—		
37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3] 과태료		○	—	—		

[첨부 2] 현행 하위법령상(별표) 과태료규정 주요내용 현황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부과기준						
3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별표] 과태료부 과기준	○		—	—		
39	정치자금사무관 리 규칙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	—	—		
40	주민소환관리규칙 [별표] 과태료부 과기준		○	—	—		
41	혈액관리법 [별표] 과태료부과 기준(제11조 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 란에서 가중 · 감경 기준 제시	
42	사회복지사업법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 제3항 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 란에서 가중 · 감경 기준 제시	
43	축산법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	○		3차	3년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 란에서 가중 · 감경 기준 제시	
4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별표 2] 과태료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 란에서 가중	

첨 부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부과기준(제29조 관련)					· 감경 기준 제시	
45	축산물가공처리법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안제32 조제3항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 란에서 가중 · 감경 기준 제시	
46	농어업재해대책법 [별표] 과태료부 과기준[제13조의2 제3항관련]	○		—	—		
47	고령친화산업 진 흥법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제3항관련]	○		—	—		
48	소방기본법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19조 제3항관련]	○		4차	1년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반 기준에서 감 경기준 제시	
49	수의사법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23조 제3항관련]	○		—	—		
50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 상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24조	○		—	—		

[첨부 2] 현행 하위법령상(별표) 과태료규정 주요내용 현황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제3항관련]						
5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 제1항관련]	○		—	—		
52	집단에너지사업법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32조 제3항관련]	○		—	—		
5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33조 제3항관련]	○		—	—		
54	해외건설촉진법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36조 제3항관련]	○		—	—		
55	근로자복지기본법 [별표] 과태료부 과기준[제38조제3 항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 란에서 가중 · 감경 기준 제시	
56	통계법 [별표] 과태료부 과기준[제53조제3 항 관련]	○		3차	1년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 란에서 가중 · 감경 기준	

첨 부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제시	
57	부동산투자회사법 [별표] 과태료부 과기준[제5조제2 항관련]		○	3차	1년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반 기준에서 가 중·감경 기 준 제시	
58	축산자조금의 조 성 및 운용에 관 한 법률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5조제 3항관련]	○		3차	3년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반 기준에서 가 중·감경 기 준 제시	
5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별표] 과태료부 과기준[제6조제3 항관련]	○		—	—		
60	검역법 [별표] 과태료부 과기준[제6조제3 항관련]	○		—	—		
61	인삼산업법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6조제 3항관련]	○		3차	1년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반 기준에서 가 중·감경 기 준 제시	
62	지적법 [별표 10] 과태료 부과기준[제71조 제2항관련]	○		—	—		
63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 [별표 1] 과태료	○		—	—		

[첨부 2] 현행 하위법령상(별표) 과태료규정 주요내용 현황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산정기준						
64	도로교통법 [별표 39] 과태료 의 감경기준(제146 조 관련)		○	—	—	감경을 산정	
65	영업조합법 [별표] 과태료의 부 과 기준(제7조 관련)	○		—	—		
66	고압가스 안전관 리법 [별표 4] 과태료 의 부과금액(제26 조제1항 관련)	○		—	—		
67	위생사에 관한 법률 [별표] 과태료의 부 과기준(제10조 관련)	○		—	—		
68	공중위생관리법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11 조 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반 기준에서 가 중·감경 기 준 제시	
69	주택법 [별표 13]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122 조제1항 관련)	○		—	—		
70	대부업 등의 등 록 및 금융이용 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12	○		3차	1년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반 기준에서 가 중·감경 기 준 제시	

첨 부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조 관련)						
71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별표 3]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13 조 관련)	○		—	—		
7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13 조제1항 관련)	○		—	—		
73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별표 16]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14 조제1항 관련)	○		—	—		
74	소음·진동규제법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15 조 관련)	○		3차	1년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반 기준에서 감 경기준 제시	
75	도시와 농어촌 간 의 교류촉진에 관 한 법률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15 조 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 란에서 가중 · 감경 기준 제시	
76	환경교육진흥법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16	○		3차	1년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반 기준에서 감	

[첨부 2] 현행 하위법령상(별표) 과태료규정 주요내용 현황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조 관련)					경기준 제시	
77	가축전염병예방법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16 조 관련)	○		3차	3년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반 기준에서 가 중·감경 기 준 제시	
78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16 조 관련)	○		3차	1년		
79	전기공사공제 조 합법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의2제3항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 란에서 가중 · 감경 기준 제시	
80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16 조제1항 관련)	○		—	—		
81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법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17 조 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 란에서 가중 · 감경 기준 제시	
82	학교급식법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		3차	3년		

첨 부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관련)						
8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별표 9]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18 조 관련)	○		—	—		
8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별표 4]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18 조제1항 관련)	○		—	—		
85	자동차관리법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20 조 관련)	○		—	—		
86	전시산업발전법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		—	—		√
87	생명윤리 및 안 전에 관한 법률 [별표 3]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20 조 관련)	○		—	—		√
88	특허법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		—	—		
89	비료관리법 [별표 4]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20 조 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 란에서 가중 · 감경 기준	√

[첨부 2] 현행 하위법령상(별표) 과태료규정 주요내용 현황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제시	
90	소방시설공사사업법 [별표 5]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21 조 관련)	○		3차	1년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반 기준에서 감 경기준 제시	
91	승강기시설 안전 관리법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		—	—		
9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별표 3]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21 조 관련)	○		—	—		
93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21 조 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반 기준에서 가 중·감경 기 준 제시	
9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21 조관련)	○		—	—		
95	청원경찰법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		—	—		

첨 부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제1항 관련)						
96	최저임금법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제3항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 란에서 가중 · 감경 기준 제시	
97	위험물안전관리법 [별표 9]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23 조 관련)	○		3차	1년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반 기준에서 감 경기준 제시	
9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별표 3]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23 조 관련)	○		3차	1년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반 기준에서 감 경기준 제시	
99	농약관리법 [별표 3]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23 조 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반 기준에서 가 중·감경 기 준 제시	
100	유선 및 도선사 업법 [별표 3]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23 조제1항관련)		○	—	—		
101	장기등 이식에 관 한 법률 [별표 3]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23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반 기준에서 가 중·감경 기	

[첨부 2] 현행 하위법령상(별표) 과태료규정 주요내용 현황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조제3항관련)					준 제시	
10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		3차	5년		
10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제1항 관련)	○		—	—		
104	정신보건법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제1항 관련)	○		—	—		
105	고용정책기본법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		3차	1년	과태료 부과기준의 일반기준에서 가중·감경 기준 제시	
10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3항관련)	○		—	—		
107	노인복지법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		—	—	과태료 부과기준의 일반기준에서 가중·감경 기준 제시	

첨 부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108	공인노무사법 [별표 4]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27 조제3항 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 란에서 가중 · 감경 기준 제시	
109	마약류관리에 관 한 법률 [별표 10]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29 조 관련)	○		—	—		
110	사내근로복지기 금법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제1항 관련)	○		—	—		
112	해운법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29 조제3항 관련)	○		—	—		
113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별표 5]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30 조 관련)	○		3차	1년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반 기준에서 감 경기준 제시	
114	유선 및 도선사 업법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		—	—		

[첨부 2] 현행 하위법령상(별표) 과태료규정 주요내용 현황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11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 해구제에 관한 법률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32 조 관련)	○		3차	5년		
116	경비업법 [별표 6]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32 조제1항 관련)	○		—	—		
117	국민건강증진법 [별표 5]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33 조 관련)	○		3차	2년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반 기준에서 감 경기준 제시	
11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별표 5]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34 조 관련)	○		—	—		
119	영화 및 비디오 물의 진흥에 관 한 법률 [별표 4]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34 조제2항 관련)	○		—	—		
120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35 조 관련)	○		—	—		√

첨 부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121	에너지이용 합리 화법 [별표 5]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35 조 관련)		○	4차	1호 - 1년 2호 이하 - 2년		
12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별표 5]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36 조 관련)	○		—	—		√
123	환경분쟁조정법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36 조 관련)	○		3차	1년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반 기준에서 감 경기준 제시	
124	영산강·섬진강수 계 물관리 및 주 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별표 5]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38 조제1항 관련)	○		3차	1년		
12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 [별표 5]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38 조제1항 관련)	○		3차	1년		
12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별표 3]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39 조 관련)	○		—	—		

[첨부 2] 현행 하위법령상(별표) 과태료규정 주요내용 현황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12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제1항 관련)	○		3차	1년		
12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		3차	1년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반 기준에서 감경기준 제시	
129	수상레저안전법 [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제1항 관련)	○		—	—		
13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제3항 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란에서 가중·감경기준 제시	
131	하수도법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	○		3차	2년		
132	전과법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		—	—		

첨 부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13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45 조 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 란에서 감경 기준 제시	
134	도시교통정비 촉 진법 [별표 5]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46 조제1항 관련)	○		—	—		
135	해양심층수의 개 발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46 조제3항 관련)	○		—	—		
136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13]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48 조 관련)	○		—	—		√
137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별표 4]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49 조제1항 관련)	○		—	—		
138	공중 등 협박목 적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 에 관한 법률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제 1항 관련)	○		—	—		√

[첨부 2] 현행 하위법령상(별표) 과태료규정 주요내용 현황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13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		3차	1년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반 기준에서 감경기준 제시	
140	식품위생법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	○		—	—		√
14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	○		—	—		
142	식품위생법 [별표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	○		—	—		
1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제1항 관련)	○		—	—		
14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1조 관련)	○		—	—		

첨 부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조제1항 관련)						
145	대기환경보전법 [별표 15]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67 조 관련)	○		3차	1년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반 기준에서 감 경기준 제시	
146	관광진흥법 [별표 5]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67 조 관련)	○		—	—		
14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제1항 관련)	○		—	—		
148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별표 6]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73 조 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 란에서 가중 · 감경 기준 제시	
149	식물방역법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		3차	1년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반 기준에서 가 중·감경 기 준 제시	
150	농어촌정비법 [별표 3]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83 조 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반 기준에서 가 중·감경 기 준 제시	

[첨부 2] 현행 하위법령상(별표) 과태료규정 주요내용 현황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15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별표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4조제1항 관련)	○		—	—		√
152	도시개발법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7조 관련)	○		—	—		
153	도로교통법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관련)	○		—	—		
154	사료관리법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		—	—	과태료 부과기준의 일반기준에서 가중·감경기준 제시	
155	실용신안법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		—	—		
15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		—	—		
15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1조제4항 관련)	○		3차	1년	과태료 부과기준의 일반기준에서 감경기준 제시	

첨 부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158	대외무역법 [별표 4]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94 조 관련)	○		3차	5년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 란에서 감경 기준 제시	
159	해양환경관리법 [별표 19]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98 조제3항 관련)	○		—	—		
160	성매매방지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9 조 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 란에서 가중 · 감경 기준 제시	
161	재외동포의 출입 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제3항 관련]	○		—	—		√
162	품질경영 및 공 산품안전관리법 [별표 4]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20 조제3항 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 란에서 감경 기준 제시	
163	전통소싸움경기 에 관한 법률 [별표 4]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21 조제3항 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반 기준에서 가 중·감경 기 준 제시	

[첨부 2] 현행 하위법령상(별표) 과태료규정 주요내용 현황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16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금액[제22조관련]	○		—	—		
16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제3항관련)	○		—	—		
166	정부법무공단법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제3항관련]	○		3차	3년		
167	낙농진흥법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제3항관련]	○		—	—		
168	노동위원회법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제3항관련]	○		—	—		
16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제3항관련]	○		—	—		

첨 부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170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제3항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 란에서 가중 · 감경 기준 제시	
171	기상관측표준화법 [별표 2] 과태료 의부과기준[제13 조제3항관련]	○		3차	2년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 란에서 가중 · 감경 기준 제시	
172	범죄피해자보호법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제3항관련]	○		—	—		
173	인체조직안전및관 리등에관한법률 [별표 2] 과태료 의부과기준[제16 조제3항관련]	○		—	—		
174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별표 3] 과태료 의부과기준[제18 조제3항관련]	○		3차	1년		
175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정리에 관 한 특별법 [별표 2] 과태료 의부과기준[제19 조제3항관련]	○		—	—		

[첨부 2] 현행 하위법령상(별표) 과태료규정 주요내용 현황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176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4]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19 조제3항관련]	○		3차			
177	농업기계화촉진법 [별표 4]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20 조제1항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 란에서 가중 · 감경 기준 제시	√
178	전염병예방법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21 조제3항관련]	○		—	—		
179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법 [별표 3]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22 조제3항관련]	○		—	—		
180	모자보건법 [별표 3]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22 조제3항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반 기준에서 가 중·감경 기 준 제시	
181	임금채권보장법 [별표 3]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26 조제3항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 란에서 가중 · 감경 기준 제시	
18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별표 7]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27 조제3항관련]	○		3차	2년		

첨 부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18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제3항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란에서 가중·감경 기준 제시	
184	계량에 관한 법률 [별표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제3항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란에서 가중·감경 기준 제시	
18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제3항관련]	○		3차	2년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란에서 가중·감경 기준 제시	√
18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별표 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	—	—		
18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제3항관련]	○		—	—		
18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제3항관련]	○		—	—		

[첨부 2] 현행 하위법령상(별표) 과태료규정 주요내용 현황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189	전자상거래 등에 서의 소비자보호 에 관한 법률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42 조관련]	○		3차	1년		
190	석유 및 석유대 체연료 사업법 [별표 10]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49 조제1항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 란에서 가중 · 감경 기준 제시	
191	선원법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53 조제3항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 란에서 가중 · 감경 기준 제시	
192	방문판매 등에 관 한 법률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58 조관련]	○		3차	1년		
193	근로기준법 [별표 7]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60 조관련]	○		—	—		
194	철도안전법 [별표 6]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64 조제3항관련]	○		—	—		
195	항공·철도 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제 3항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반 기준에서 감 경기준 제시	

첨 부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196	전력기술관리법 [별표 6] 과태료 처분기준[제30조 제3항관련]	○		—	—		
197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별표] 과태료처 분의기준[제33조 제3항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 란에서 가중 · 감경 기준 제시	
19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 3] 과태료 처분의기준[제37 조제3항관련]	○		—	—		
199	건설기계관리법 [별표 24] 과태료 처분의기준[제94 조관련]	○		—	—		√
200	영화 및 비디오 물의 진흥에 관 한 법률 [별표 5] 법 제98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	○		5차	1년		
201	항로표지법 [별표 4] 위반행 위별 과태료 부 과기준(제24조제3 항 관련)	○		—	—		

[첨부 2] 현행 하위법령상(별표) 과태료규정 주요내용 현황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202	도시가스사업법 [별표 2] 위반행위 별 과태료 부과 기준(제27조제1 항 관련)	○		—	—		
203	양곡관리법 [별표] 위반행위 별 과태료 부과 기준(제35조제3항 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반 기준에서 가 중·감경 기 준 제시	
204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별표 5] 위반행위 별 과태료 부과 기준(제43조제3 항관련)	○		—	—		
20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별표] 위반행위 별 과태료금액(제 19조관련)		○	—	—		
206	원양산업발전법 [별표 2] 위반행위 별 과태료의 부 과 기준(제21조제 3항 관련)	○		—	—		

첨 부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207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별표] 위반행위 별 과태료의 부 과기준(제11조제3 항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 란에서 가중 · 감경 기준 제시	
208	선박법 [별표] 위반행위 별 과태료의 부 과기준(제13조제3 항 관련)	○		—	—		
209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 에 관한 법률 [별표 2] 위반행 위별 과태료의 부 과기준(제16조제3 항 관련)	○		—	—		
210	어선법 [별표]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 준(제19조 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 란에서 가중· 감경기준 제 시(범위불비)	
211	농산물품질관리법 [별표 3] 위반행위 별 과태료의 부 과기준(제33조 관련)	○		2차	1년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반 기준에서 가 중·감경 기 준 제시	
212	식품산업진흥법 [별표 1] 위반행 위별 과태료의 부 과기준(제40조 관련)	○		3차	1년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반 기준에서 가 중·감경 기 준 제시	

[첨부 2] 현행 하위법령상(별표) 과태료규정 주요내용 현황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213	수산물품질관리법 [별표 6] 위반행위 별 과태료의 부과 기준(제42조 관련)	○		2차	1년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반 기준에서 가 중·감경 기 준 제시	
214	산지관리법 [별표 10] 위반행위 별 과태료의 부과 기준(제53조 관련)	○		—	—		
215	수산업법 [별표 5] 위반행위 별 과태료의 부과 기준(제72조 관련)	○		—	—		✓
2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3] 위반행위 별 과태료의 부과 기준(제73조 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 란에서 가중 · 감경 기준 제시	
217	원자력손해배상법 [별표 2] 위반행 위별 과태료의 부 과기준[제19조제3 항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 란에서 가중 · 감경 기준 제시	
218	철도사업법 [별표 2] 위반행위 별 과태료금액[제 17조제3항관련]	○		—	—		
219	소비자기본법 [별표 2] 위반행위 별 과태료금액[제	○		—	—		

첨 부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69조제3항관련]						
220	낙시어선업법 [별표] 위반행위별 과태료부과기준 [제11조제3항관련]	○		—	—		
221	어장관리법 [별표 2] 위반행위 별과태료부과기준 [제15조제3항관련]	○		3차	1년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 란에서 감경 기준 제시	
222	건축사법 [별표 3] 위반행위 별과태료부과기준 [제34조제3항관련]	○		—	—		√
223	해양사고의조사및 심판에관한법률 [별표 2] 위반행위 별과태료부과기준 [제80조제3항관련]	○		—	—		
224	비과과검사기술 의진흥및관리 에관한법률 [별표 3] 위반행 위별과태료의부 과기준(제16조제3 항관련)	○		—	—		
225	어촌·어항법 [별표] 위반행위별 과태료의부과기준 (제46조제3항관련)	○		—	—		
226	항만과 그 주변지 역의 개발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별표 2] 위반행 위별과태료의부과		○	—	—		

[첨부 2] 현행 하위법령상(별표) 과태료규정 주요내용 현황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기준[제10조관련]						
227	친환경농업육성법 [별표] 위반행위별 과태료의부과기준 [제12조제3항관련]	○		3차	2년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반 기준에서 가 중·감경 기 준 제시	
228	해상교통안전법 [별표 3] 위반행 위 별 과 태 료 의 부 과 기준[제15조제3 항전단관련]	○		—	—		
229	내수면어업법 [별표] 위반행위별 과태료의부과기준 [제18조제3항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 란에서 감경 기준 제시	
230	선박안전법 [별표 2] 위반행 위 별 과 태 료 의 부 과 기준[제22조제3 항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 란에서 감경 기준 제시	
231	기술개발촉진법 [별표] 위반행위별 과태료의부과기준 [제29조제3항관련]	○		—	—		
232	수난구호법 [별표] 위반행위별 과태료의부과기준 [제33조제3항관련]	○		—	—		
233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별표 2] 위반행 위 별 과 태 료 의 부 과 기준[제37조제3	○		—	—		

첨 부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향관련]						
23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별표 2] 위반행 위 별 과태료의 부 과기준[제38조제3 항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반 기준에서 가 중·감경 기 준 제시	
235	한국보건복지인 력개발원법 [별표] 위반행위 의 종류 및 과태 료(제10조제3항 관련)	○		—	—		
236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별표 4] 위반행위 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제23조제3항 관련)	○		—	—		
237	중소기업창업 지 원법 [별표 2] 위반행 위의 종류별 과 태료 금액(제33조 제3항 관련)	○		—	—		
238	청소년활동진흥법 [별표 5] 위반행 위의 종류별 과태 료 금액(제34조제	○		—	—		

[첨부 2] 현행 하위법령상(별표) 과태료규정 주요내용 현황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3항관련)						
23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 기준(제8조 관련)	○		—	—		
24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1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28조 관련)	○		3차	1년		
241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2조 관련)	○		3차	1년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반 기준에서 가중·감경 기준 제시	
242	고용보험법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46조 관련)	○		—	—		
24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2조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란에서 감경 기준 제시	

첨 부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제1항 관련)						
24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별표 6]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4조 관련)	○		—	—		
24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별표 8]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37조제3항 관련)	○		—	—		
246	환경영향평가법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45조 관련)	○		3차	1년	과태료 부과기준의 일반기준에서 가중·감경기준 제시	
247	국민건강보험법 [별표 6]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65조 관련)	○		3차	1년		
248	중자산업법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	○		3차	2년		

[첨부 2] 현행 하위법령상(별표) 과태료규정 주요내용 현황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75조제3항관련)						
24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2] 위반행 위의 종류별 과 태료금액(제27조 제3항 관련)	○		—	—		
250	약사법 [별표 3] 위반행위 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제39조 관련)	○		—	—		
251	항만법 [별표 4] 위반행 위의 종류별 과 태료금액(제67조 제3항 관련)	○		—	—		
252	지하수법 [별표 8] 위반행 위의 종류별 과 태료금액[제44조 제3항관련]	○		—	—		
253	전기사업법 [별표 4] 위반행 위의 종류별 과 태료의 금액(제63 조제3항관련)	○		—	—		
254	방송법 [별표 4] 위반행 위의 종류별 과 태료의 부과기준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 란에서 감경 기준 제시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제69조 관련)						
25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별표 3] 위반행위 의 종류에 따른 과 태료의 금액(제48조 제3항 관련)	○		—	—		
256	물류정책기본법 [별표 4] 위반행 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제 55조제3항 관련)	○		—	—		
257	교통안전법 [별표 9] 위반행 위의 중별과 과태 료의 부과금액(제 49조제3항 관련)	○		—	—		
258	수로업무법 [별표 3] 위반행위 의 종류별 과 태료 [제32조제3항관련]	○		—	—		
259	측량법 [별표 3] 위반행위 의 종류별 과 태료 [제51조제3항관련]	○		—	—		
260	건설산업기본법 [별표 7] 위반행위 의 종류별 과 태료 [제89조제3항관련]	○		—	—		
261	재외동포재단법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과태료금액	○		—	—		

[첨부 2] 현행 하위법령상(별표) 과태료규정 주요내용 현황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제15조제3항 관련)						
262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별표 5] 위반행 위의 종류별 과태 료금액[제16조제3 항관련]	○		—	—		
263	개항질서법 [별표 4] 위반행 위의 종류별 과태 료금액[제18조제3 항관련]	○		—	—		
264	청소년기본법 [별표 6] 위반행 위의 종류별 과태 료금액[제38조제3 항관련]	○		—	—		
265	대덕연구개발특 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별표 9] 위반행 위의 종류별 과태 료금액[제44조제3 항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 란에서 감경 기준 제시	
266	광산보안법 [별표] 위반행위 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제47조의2제 3항관련]	○		—	—		
267	건설기술관리법 [별표 7] 위반행 위의 종류별 과태 료금액[제63조제3	○		—	—		

첨 부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향관련]						
268	송유관안전관리법 [별표 2] 위반행 위의종류별과태료 금액[제7조제3항 관련]	○		—	—		
269	사회적기업 육성법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과태료부과 기준[제14조제3항 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 란에서 감경 기준 제시	
27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2] 위반행 위의종류별과태 료부과기준[제26 조제3항관련]	○		3차	1년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반 기준에서 가 중·감경기 준 제시	
271	학교안전사고 예 방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별표 8] 위반행 위의종류별과태 료부과기준[제34 조제3항관련]	○		3차	1년		
272	직업안정법 [별표] 위반행위 의종류별과태료 부과기준[제38조 제3항관련]	○		—	—	과태료 부과 기준의 비고 란에서 감경 기준 제시	

[첨부 2] 현행 하위법령상(별표) 과태료규정 주요내용 현황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27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57조 제3항관련]	○		3차	1년		
274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6조관련]	○		—	—		
275	지방공기업법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79조 제3항관련]	○		—	—		
27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7조 제3항관련]	○		4차	3년		
27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83조 제3항관련]	○		—	—		

첨 부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278	공연법 [별표 4] 위반행 위의 종류별 과태 료의 금액[제24조 제3항관련]	○		—	—		
27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별표 4] 위반행 위의 종류별 과태 료의 금액[제24조 제3항관련]	○		—	—		
280	문화산업진흥 기 본법 [별표] 위반행위 의 종류별 과태료 의 금액[제47조제3 항관련]	○		—	—		
281	삭도·레도법 [별표 2] 위반행 위의 종류별 과태 료의 금액[제9조제 3항관련]	○		—	—		
282	전기공사업법 [별표 5] 위반행 위의 종류에 따른과 태료부과기준[제 18조제3항관련]	○		—	—		
283	음악산업진흥에 관 한 법률 [별표 2] 위반행위 의 종류별과태료금액 [제17조제3항관련]	○		—	—		

[첨부 2] 현행 하위법령상(별표) 과태료규정 주요내용 현황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284	한국국제보건의료 재단법 [별표] 위반행위종 류 및 과태료금액 [제14조제3항관련]	○		—	—		
285	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 [별표 5] 위반행 위 종별에 따른과 태료부과기준[제 89조제3항관련]	○		—	—		
286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3의2] 자수 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준		○	—	—		
287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공시의 무위반 관련 과태 료의 부과기준	○		-	-	-	
288	외국인토지법 시 행령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7조제 1항 관련)	○		-	-	-	
2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별표 28] 과태료 의 부과 기준(제 134조제1항 관련)	○		-	-	-	

첨 부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290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제1항 관련)	○		-	-	-	
291	언론중재 및 피 해구제 등에 관 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제1항 관련)	○		-	-	-	
292	기상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		3차	1년	위 반 행 위 와 동기를 고려 하여 1/2 감경	
293	철도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제 1항 관련)	○		-	-	-	
294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18 조제1항 관련)	○		-	-		
295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 의 부과기준(제19 조 관련)	○		-	-		수개의 위 반행위에 대하여 동 시에 처분 할 경우에 는 위반행 위별로 과 태료를 산 정하여 그

[첨부 2] 현행 하위법령상(별표) 과태료규정 주요내용 현황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중 가장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 금액을 부과
296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		3차	1년	위반행위와 동기를 고려하여 1/2 감경	
297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제1항 관련)	○		-	-	-	
298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		3차	1년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 등을 고려하여 1/2 범위에서 가중-감경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면제권한
299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제1항 관련)	○		-	-	-	

첨 부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300	산업발전법 [별표 4] 과태료의 부과 기준(제32조제1항 관련)시행령	○		-	-	-	
30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		3차	1년	위 반 행 위 와 동기를 고려하여 1/2 감경	
30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		3차	1년	위 반 행 위 와 동기를 고려하여 1/2 감경	
303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		-	-	-	
304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		3차	1년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 및 횡수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참작하여 제2호에서 정	

[첨부 2] 현행 하위법령상(별표) 과태료규정 주요내용 현황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p>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p> <p>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p> <p>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p> <p>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p>	

첨 부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05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제1항 관련)	○		3차	1년	-	
306	상표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제1항 관련)	○		-	-	-	
307	저작권법 시행령 [별표 1] 과태료의 부과기준	○		-	-	위반 행위자의 사업규모, 불법복제물 등의 차단 노력 정도, 위반의 동기·정도,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2가지 분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 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까지 기중할 수 있다 다만 기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

[첨부 2] 현행 하위법령상(별표) 과태료규정 주요내용 현황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을 초과할 수 없다.
308	저작권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	○		3차	1년	위반 행위자의 사업규모, 위반의 동기·정도, 사회적·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기준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과 태 료 부 과 시 위 반 행 위 가 들 이 상 인 경 우 에 는 중 한 과 태 료 를 부 과 하 되, 그 금 액 의 2 분 의 1 까 지 가 증 중 할 수 있 다. 다 만, 가 중 하 는 경 우 에 도 과 태 료 의 총 액 은 1,000 만 원 을 초 과 할 수 없 다

첨 부

번호	법률명	입법형식		차수규정		가중·감경 규정	비고
		대통령령	부령	차 수	위반행위차수 산정기준 (일정기간=년)		
309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기업결합 신고의무위반 관 련 과태료의 부과 기준	○		-	-	-	가산사유 및 금액
총계	309	291	18	70	70	106	

[첨부 3] 현행 과태료-영업정지 병과법률 현황

번호	소관부처	법령명	규정내용
1	기획재정부	담배사업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을 바꾸어 판매한 자
3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 폐지 미신고
4			제9조제3항 미신고
5			제20조제1항, 제2항 미보고, 자료 미제출
6			제20조제3항, 제6항 검사 불응 등
7			제20조제4항, 제6항 자료 미제출
8			제20조제5항, 제6항 시정 명령 불응
9			제21조 기재부장관 명령 위반 미통부
10			제24조제2항 기재부장관 명령 위반 전자문서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자
11	교육과학기술부	비과과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
12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호 일반게임장 청소년 출입
13			제28조제6호 음란성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 미설치

번호	소관부처	법령명	규정내용
14			제25제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15			제26조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6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17		공연법	법 제11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때
18			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위반 가. 설계검토·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청의 개·보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9			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위반 나. 수시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0		관광진흥법	제8조제4항 지위승계 미신고 영업
21			제11조 부대시설 외 시설 타인 경영
22			제28조제2항 영업준칙 미준수
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변경 미신고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변경 미신고, 변경 미등록	
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 제19조 (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경우	

번호	소관부처	법령명	규정내용
26			법 제20조 (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경우
27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소규모업종의 영업을 한 경우
28	농림수산식품부	기르는 어업육성법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진료를 거부한 때
29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극약·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때
30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진료부 및 검안부를 비치·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때
31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수산생물진료업을 한 때
32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관리하게 한 때
33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상 휴업한 때

번호	소관부처	법령명	규정내용
3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검 사 불응 방해
35			제74조제1항 시설물의 사 용기준 위반
36			제81조 명령 위반
3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 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 영한 경우
38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9		동물보호법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 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자
40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 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41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 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 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2		수산업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 미 신고 휴업, 경영
43		원양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 제2항 미신 고 휴업 등
44			제13조 준수사항 위반
45		축산물가공처리법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때
46			법 제8조제2항 가. 자체위 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 니한 때

번호	소관부처	법령명	규정내용		
47			법 제8조제2항 나.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때		
48			법 제9조제2항 다.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때(도축업에 한한다)		
49			법 제9조제2항 라. 작성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때(도축업에 한한다)		
50			제8조제2항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		
51			제9조제2항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미작성		
52			제24조제2항 미신고		
53			제25조 미보고		
54			제29조 건강진단 미검진		
55			제29조 제3항 건강진단 미검진 종업원 종사		
56			제30조제2항 위생교육 미이수 영업자 영업		
57			제30조제3항 위생교육 미이수 종업원 등 종사		
58			제31조제1항 가축 도살 거부		
59			지식경제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안전관리규정 미제출
60					제11조제3항 안전관리규정 미포함

번호	소관부처	법령명	규정내용	
61			제15조제4항 대리자 미지정	
62			제25조제1항 보험 미가입	
63			제11조제4항 변경 명령 위반	
64			제13조의2제2항 변경 명령 위반	
65			제16조제4항후단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위반	
66			제11조제5항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실시기록 미작성 보존	
67			제10조제3항 고압가스 미증지, 미신고	
68			제13조제4항 용기 안전 유지 관리 위반	
69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 위반	
70			제24조제2항 이전 등 명령 위반	
71			제10조제4항 개선 명령 위반	
72			제11조의2 미표시	
73			제23조제1항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74			제23조제2항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75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제3항 안전관리규정 변경 명령 위반
76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7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번호	소관부처	법령명	규정내용
78	보건복지가족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수명령을 위반한 때
79			제21조제1항 자가품질검사 기록 미보존
8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81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을 겸업한 경우
8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조사나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83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의2 목용장 수질 위생 위반 개선명령 미이행
84			제4조제7항 숙박업소 위생 안전 위반
85			제4조제7항 목욕장업소 위생 안전 위반
86			제9조 미보고 출입 검사 등 거부 등
87			제10조 개선명령 위반
88			제4조제3항 각호 및 제7항 이용업소 위생 위반
89			제4조제4항 각호 및 제7항 미이용업소 위생 위반

번호	소관부처	법령명	규정내용
90			제4조제5항 및 제7항 세탁업소 위생 위반
91			제4조제6항 및 제7항 위생관리용역업소 위생 위반
92			제8조제2항 영업장 외 이용 미용
93			제17조제1항 위생교육 미이행
9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영업한 자
95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를 위반하여 자료제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96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미보존
97			제11조제2항 미기록
98			제11조 장부 향정신의약품 미기록보존
99			제12조 미보고
100	제15조 향정신의약품 저장		
101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위반 미보고		
102	제32조 처방전 미보전		
103	제35조제4항 장부미보전		
10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4항 미신고, 휴폐업 미신고	

번호	소관부처	법령명	규정내용
105			제28조제2항 내지 제5항 폐기 등 의무 위반
106			제29조제1항, 제2항 보존 의무 위반, 열람등사 거부
107			제32조제3항, 제4항 변경 미신고
108			제35조 기록 환자 외 제공
109			제35조의2제2항 정보관리 및 보안 담당 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자
110			제37조제1항후단 변경 미신고 치료
111		식품위생법	제11조제2항 영양표시 기준 미준수
112			제12조제1항, 제2항 육류, 쌀, 김치류 원산지 미표시
113			제37조제5항 미보고
114			제74제1항에 따른 명령 위반
115	제42조제1항 경미한 위반 행위		
116	제44조제1항 경미한 위반 행위		
1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기관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때	

첨 부

번호	소관부처	법령명	규정내용	
118			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 구급의약품의 관리, 응급구조사의 표시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119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120		의료기기법	제조업자·수입업자가 법 제13조 또는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21		의료법	제61조제1항 검사 거부 등	
122			제33조제5항 변경 미신고	
123			제40조제1항, 제2항 휴폐업 미신고 등	
124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불응한 때
125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업무를 종료한 때
1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번호	소관부처	법령명	규정내용
127			나)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128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개인·가족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
129			나) 개인·가족자연장지의 조성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130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 및 가격표 게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시한 외의 금품을 받은 때
131		전염병예방법	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32			법 제4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실시 사항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때
133		정신보건법	제39조 위반 미보고, 허위보고 등
134		화장품법	제3조제1항 변경신고 불이행
135			제4조제1항 변경 미심사
136			제5조제3항 생산실적, 수입실적 미보고
137	제6조 위반 폐업		

번호	소관부처	법령명	규정내용
138			제16조 위반 보고
139	환경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처리 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처리시설의 관리 기준 위반
140			제28조제1항 변경 미신고, 거짓신고
141			제30조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
142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143			제41조제1항 미 또는 거짓 보고자료제출
14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용역이행실적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145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폐기물간이인 계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산처리기구에 자료나 정보를 전송한 때

번호	소관부처	법령명	규정내용	
146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때	
147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148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때	
149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때	
150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때	
15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때	
15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때	
153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3호, 4호
154				제31조제2항 거짓 기록, 기록 미보존
155				제32조제3항2호
156				제39조제1항 자가측정 미

번호	소관부처	법령명	규정내용
157			실시, 측정방법 위반 제39조제1항 자가측정결과 거짓 기록, 기록 미보존
158			제23조 변경미신고
159			제64조제3항 준수사항 위반
160			제68조제3항3호 준수사항 위반
161			먹는물관리법
162		제48조제1항 위반 기록 미 보존, 거짓 기록	
163		제42조 미보고	
164		제45조제2항 명령 위반	
165		소음·진동규제법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한 때
166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 환경기술인 미임명
167			제62조제2항3호 준수사항 미이행
168			제38조제3항 배출시설 등 운영상황 기록 미보존, 거 짓기록
169			제38조의2제1항제2호 측정 기기 등 미부착
170			제33조제2항, 제3항 변경 미신고
171			제67조 기술요원 교육 미 참석하게 하는 경우
17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7조제1항 자료 미제출
173			제20조제2항 변경 미신고
174			제39조제3항 자체방제계획 사전 미통보
175	제45조제1항 미보고 , 미 제출		

번호	소관부처	법령명	규정내용
176			제46조제1항 미기록, 미보존
177			제40조제1항, 제2항 사고 응급미조치, 미신고
178			제34조제3항 변경 미신고
179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 체없이 통보하지 아니한 토 양관련전문기관
180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 여 지체없이 통보하지 아 니한 토양관련전문기관
181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 여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 니한 토양관련전문기관
182			법 제23조의2제4항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토양관련 전문기관
183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위반 폐기물 수집 등
184			제25조제9항 준수사항 위반
185			제31조제1항 위반 폐기물 처리시설 유지 등
186			제18조제3항 폐기물 인계 인수 전자정보처리장치 미 입력
187			제25조제11항 변경신고 미 이행
188			제19조제1항 서류 등 미소지
189			제36조제1항 장부 미기록, 미보존
190	하수도법	제47조제1항 수수료 위반	
191		제47조제2항 분뇨수집 등	

첨 부

번호	소관부처	법령명	규정내용
			준수사항 위반
192			제67조제2항 기술인력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193			제68조제2항 기록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재한 경우
194			제69조제1항 미보고, 자료 미제출
195			제69조제1항 출입, 검사 방해
196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97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198	노동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99			제37조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200			법 제38조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검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때
201	여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의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202	국토해양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태만

번호	소관부처	법령명	규정내용
			히 한 자
203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태만히 한 자
20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감정평가서 보존 의무 위반
205	제37조제3항 자기 또는 친족 감정		
206	제42조 검사 거부, 방해, 기피, 거짓 보고		
20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 제17조를 위반한 자
208	법 제18조를 위반한 자		
209	법 제21조를 위반한 자		
210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자		
211		삭도·궤도법	제27조제1항 안전검사 받지 아니한 자
212	제30조제1항 보고명령 불응		
213		선박안전법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2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제4항 어린이 요금 징수
215	제17조 사업용자동차 표시 위반		
216	제19조제2항 사고시 보고 의무 위반		
217	제23, 제33조, 제44조 개선 명령 또는 운행명령 위반		

번호	소관부처	법령명	규정내용
218			제39조 기한 내 터미털 사 용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19			제42조제3항 중지명령이나 시행명령 미이행
220			제79조제1항 미보고
221			제79조제1항 서류 미제출
222			제79조제2항 검사 거부 등
223			제83조 자가용자동차의 사 용 제한 금지 명령 위반
224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225			제58조제3항의 규정의 준 수사항을 위반한 때
226		철도사업법	제21조 개선명령 위반
22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건강진단 받 지 아니한 자
228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불응 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
229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 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230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 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 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

번호	소관부처	법령명	규정내용
231			제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32			제3조제6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33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234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35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자
236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를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

첨 부

번호	소관부처	법령명	규정내용	
237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238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39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자	
240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자	
241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24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43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244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45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 위반 오류원인과 처리결과 미통지
246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번호	소관부처	법령명	규정내용
247		전파법	제25조제1항 각 회 외의 본문 준공검사를 받지 않 고 무선국 운용
248			제25조제2항 허가 신고 사 항 외 무선국 운용
249			제30조제1항 통신보안 미 준수
250			제45조 무선설비 기술수준 부적합
251			제47조 무선설비 안전시설 기준 미설치
252			제70조제4항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 운용 공사
253			문화재청
254	법 제80조 바.장부를 검인 받지 아니한 경우		
255	법 제80조 사.장부를 과기 또는 양도한 경우		
256	법 제80조 가.장부를 비치 하지 아니한 경우		
257	법 제80조 나. 거래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258	법 제80조 다. 거래사실을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259	법 제80조 마.사진을 부착 하지 아니한 경우		
260	소방방재청	소방시설공사업법	

첨 부

번호	소관부처	법령명	규정내용	
261			제8조제3항 지위승계 등 미통지	
262			제8조제4항 서류 미보관	
263			제12조제2항 소방기술자 공사현장 미배치	
264			제14조제1항 완공검사 받지 아니한 자	
265			제15제3항 하자 미보수, 미통보	
266			제19조제3항 미보고	
267			제20조 감리결과 미통보	
268			제22조제2항 하도급 등 미통지	
269			제22조제3항 하수급의 변경요구 미이행	
270			제24조 동일인이 공사 및 감리	
27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미신고
272				제25조제2항 거짓보고
273				제33조제2항 지위승계 미통지
274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법

[첨부 3] 현행 과태료-영업정지 병과법률 현황

[첨부 4] 현행 과태료·벌금 병과법률 현황

■ 과태료·벌금(형벌) 중복부과 유형

- ① 구성요건이 동일한 경우
- ② 과태료 부과 구성요건에 다른 구성요건이 추가되어 벌금(형벌)을 부과하는 경우

■ 과태료·벌금(형벌) 중복부과 대상 법률 및 위반행위

번호	소관부처	법률	비고
1	기획재정부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①
2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②
3	보건복지가족부	공중위생관리법	①
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①
5		약사법	①
6	환경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②
7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②
8		폐기물관리법	②
9	국토해양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②
10		항공법	①②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법	①
12	위원회	정치자금법	②

[첨부 5] 현행 과태료-과징금 병과법률 현황

번호	소관부처	법률
1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법
2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관광진흥법
4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5		수산업법
6		원양산업발전법
7		축산물가공처리법
8	지식경제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9		도시가스사업법
10	보건복지가족부	공중위생관리법
1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2		의료기기법
13		의료법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5		정신보건법
16		화장품법
1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8	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9		대기환경보전법
20		먹는물관리법
2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3		폐기물관리법
24		하수도법
25		국토해양부
26	삭도케도법	

첨 부

번호	소관부처	법 률
27		주택법
2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9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30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2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33		전과법
34	소방방재청	소방시설공사업법
3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첨부 6] 현행 과징금-벌금 병과법률 현황

※ 벌칙 유형 : ① 징역과 벌금 선택(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② 징역과 벌금 병과, ③ 벌금만 규정

번호	부 처	법 령 명	비 고
1	기획재정부	관세법	①
2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법	①②③
3	행정안전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①
4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①②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8		저작권법	①
9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①
10		비료관리법	①②
11		사료관리법	①
12		원양산업발전법	①②
13		수산업법	①
14		축산물가공처리법	①②
15		축산법	①
16	지식경제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①③
17		도시가스사업법	③
1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①
19		석탄산업법	①
2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①③
21		전기사업법	①②③
22		집단에너지사업법	①

첨 부

번호	부 처	법 령 명	비 고	
23	보건복지가족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①	
24		공중위생관리법	③	
25		국민건강보험법	①	
26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①②	
27		모자보건법	①	
2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①	
29		식품위생법	①②	
3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①	
31		약사법	①②③	
32		의료급여법	①	
33		의료기기법	①②③	
34		의료법	③	
35		정신보건법	①	
36		환경부	화장품법	②③
3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38	대기환경보전법		①③	
39	먹는물관리법		①②	
4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①③	
41	악취방지법		①	
4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①③	
43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①	
44	폐기물관리법		①	
45	하수도법		①	
46	국토해양부	건설산업기본법	①③	
47		도시철도법	①③	
4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49		물류정책기본법	①	
50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①	

번호	부 처	법 령 명	비 고	
51		삭도궤도법	①③	
5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①③	
53		자동차관리법	①	
54		주차장법	①	
55		주택법	①	
56		철도사업법	①③	
57		항공법	③	
58		항만법	①	
59		항만운송사업법	①	
6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②	
61		해운법	①③	
62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③
6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①
6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③
65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②	
66		상호저축은행법	②	
67		여신전문금융업법	②	
6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②	
69		전자금융거래법	①②	
7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①③	
7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①	
72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①	
73		전기통신사업법	①③	
74		전기통신기본법	①	
75		전파법	①	
76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77	소방방재청	소방시설공사사업법	①③	
78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③	
79		위험물안전관리법	①③	
80		유선 및 도선사업법	①	